

ISSN 2465-9207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제7권
제2호
2021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 제2호 ■ 2021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 특집호]

■ 기획논문 명예훼손과 피해구제

- 1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65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이주희 (변호사 이주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 121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부록

- 158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169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 175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 Contents

- 1 **Legislation and the Reality of Damage Relief Based on Defamation** -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Cho, So Young
Professor, Law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65 **Study on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Lee, Joo Hee
Lawyer, Lee Joo Hee Law Office
- 121 **A Study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amage Remedies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fter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Baek, Kyoung Hee
Associate Professor, Inha University Law School, Lawyer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

조 소 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국 문 초 록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 명예권이 보호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명예권의 보호법제는 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적 가치로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체적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명예’는 형법에 의한 ‘명예보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명예훼손과 명예권의 침해는 그 범위도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였다. 언론중재절차 입법과 새로운 권리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더 다양해졌고, 각각의 제도는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서 구제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

* sylex@pusan.ac.kr

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아 왔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처음 규정된 이래로 2005년 언론중재법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데 모아서 입법하기까지, 그 이후로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계속 개선적인 발전을 보여왔다고 할 만 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근거인 언론중재법의 관련 내용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또 한편 이 연구의 필요성은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규정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피해규정에 대한 위헌논의들을 정리해 보고자 함에 있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권조항 및 가처분조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규정들에 대한 위헌주장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피해구제제도 규정(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권, 시정권고, 조정과 중재)과 그 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보여준 법원의 해석과 판단기준 등을 통해 해당 규정과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개선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조정 및 중재절차, 시정권고제도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언론중재법의 등장과 위헌 논의
- III. 정정보도청구권
 - 1. 청구요건 내용과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 2. 정정보도청구 거부 사유
- IV. 반론보도청구권
 - 1. 연혁
 - 2. 청구요건 내용과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 3. 추후보도청구권
- V. 손해배상청구
 - 1. 규정 내용
 - 2. 위헌 논의
 - 3.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 VI. 이른바 금지청구권
 - 1. 규정내용
 - 2. 관련 판례
- VII. 권리에 관한 분쟁해결절차
 - 1. 조정
 - 2. 중재
 - 3.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통계
 - 4. 소송
- VIII. 시정권고
- IX.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식주는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 외에도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명예’다. 명예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로 풀이 된다¹⁾. 오랜 시간

1)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참조. 혹은 ‘자기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를 정치적 생활의 목적으로 삼았었고, 스토아 학파에서도 건강·부(富)와 더불어 명예를 지고선(至高善)으로 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명예라는 가치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함께 가야 하는 가치였고 세상과 유리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에게 때로는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근세 시민 생활의 발전역사에서 명예라는 가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한 사람의 인격 존엄에 관한 중요한 덕목(德目)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늘 법의 사회적 의미와 기능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법이 보호하는 ‘명예’의 의미는 상술한 사전적 의미나 일상적 생활 속에서의 그 의미보다 협의적이다. 사람이 천부적으로 보유하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인 내적 명예나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내리는 주관적 감정인 명예감정은 법제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 기본권인 명예권²⁾이 보호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³⁾으로 해석된다.

한편 명예권의 보호 법제는 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가지는 여러 가지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적 가치로 보호하면서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체적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명예와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과 사생

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2) 현재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판례집> 11-1, 768, 774; 현재 2008. 11. 27. 2008헌마517 결정 <판례집> 20-2하, 509, 518.

3) 현재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판례집> 17-2, 311, 319; 현재 2008. 11. 27. 2008헌마517 결정 <판례집> 20-2하, 509, 518.

활의 비밀 보호와의 상호관계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헌법에서 말하는 명예는 형법에 의한 ‘명예보호’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명예훼손과 명예권의 침해는 그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다.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범으로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나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⁵⁾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의 특칙)을 두고 있고,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에 새로운 변화가 등장했다. 소송이 아닌 형태의 제도를 디자인한 언론중재절차의 입법과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분이 아닌 새로운 권리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현재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에 이르기까지 현행 법상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다양하고, 각각의 제도는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다⁶⁾.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구제를 위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각 제도의

4) 허영 (2021). <한국헌법론>. 박영사, 624-625. 따라서 헌법이 보호하는 사람의 명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가 되지만, 명예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그 해석지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언론매체의 명예 훼손적 표현에 관련된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공인성이나 사안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해석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판례집> 11-1, 768, 777).

5)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던 사건에서, 민법 제76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으로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 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②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③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 광고 등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결정 <판례집> 3, 149, 157-158).

6) 언론피해구제제도 일반에 대해서는, 이재진 (2015). 언론법과 피해구제제도의 변화. <관훈저널>, 통권136호, 52-58 ; 문재완 외 (2017). <미디어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185-214;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제6장; 김옥조 (2006).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커뮤니케이션북스, 제10장 등 참조.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아 왔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정정보도청구권⁷⁾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처음 규정된 이래로 2005년 언론중재법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데 모아서 입법하기까지, 그 이후로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계속 개선적인 발전을 보여 왔다고 할 만하다⁸⁾. 이 글에서 명예훼손과 피해구제제도에 대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의 근거가 되는 언론중재법의 관련 내용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기도 하다.

II. 언론중재법의 등장과 위헌 논의

이른바 참여정부에서 2005년 개혁 입법으로 등장한 입법 중의 하나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⁹⁾이었다. 동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화하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중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

7) 해석상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인정되었지만, 해당 법률규정상의 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이었다.

8)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65.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제정이유로 했다¹⁰⁾. 동법에 규정된 피해구제제도로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언론사와의 접촉 전이나 언론사와 협의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 사건을 포함한 조정이나 중재 신청 인정 등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법 제정 이후,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는 위헌소인이 제기되었다¹¹⁾. 이 사건에서 위헌을 주장했던 청구인측은 ①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규정과 정정보도청구권이 배제되는 사유로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해 적용하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불법행위법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위법성 요건을 전혀 배제하였다는 점 등에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가치분절차에 의해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언론사는 물론 피해자의 대심적 변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인격권침해에 대하여 언론사의 귀책사유로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을 허용하는 한 위헌이고, 징벌적 손해를 의미하게 될 정도의 고액의 배상을 인용하는 등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④ 중재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통상 중재판정의 경우 인정되는 취소의 소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권한을 강화한 것은 대의적 헌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에 대한 일반적 감시·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권립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위헌주장의 이유를 제시했다¹²⁾. 또한 동

10) URL: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6565&lsId=&efYd=20050728&chrClsCd=010202&urlMode=lsE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1)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조항들의 위헌성을 이유로 위헌제청을 했던 제청법원도, ①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에 기인한 보도인지의 여부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언론기관에게 과도한 사실조사 의무를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 차원의 언론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②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해 민사집행법상의 가치분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정보도청구권 중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인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님”에 관한 입증이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소명만으로 충분하다는 결과가 됨으로써 언론사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제청의 이유를 밝혔다¹³⁾.

한편 동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 및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관광부장관 및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은 ①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헌법적 근거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구분¹⁴⁾될 뿐이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이나 배제사유에 관해 반론보도청구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신속한 정정보도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가치분 절차에 의해 심판하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② 언론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행사에 고의나 중

12)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3-475[이외에도 청구인측은 당시 언론중재법상의 다른 규정인 언론의 공적 책임 조항, 인격권 보장 조항, 언론중재위원회 조항(인적 구성, 기능 및 관할), 고충처리인 조항, 소급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청구를 하였다.]

13) 이 사건은 병합사건이었고, 이는 ‘2006헌가3’ 위헌법률심판사건에 청구된 제청법원의 위헌이유였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6).

14) 언론보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언론보도의 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할 것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정정보도청구권), 아니면 자신들의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칠 것인지(반론보도청구권)의 양적 구분이라고 보았다.

과실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언론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만 고의나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도 종전 법원의 실무상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③ 중재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것은 당사자 쌍방이 정정보도청구 등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는데 근거한 것이므로,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소송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내리는 시정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칠 뿐,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재심을 청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합헌의 이유를 설명했다¹⁵⁾. 또한 법무부장관도 ①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시정권고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마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중재법 해석상 언론중재 결정에 대하여도 중재법이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재절차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법 규정을 용인하면서 사법절차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할 것을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법권에 의한 구제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반론권 보장에 의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언론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한 특별한 권리로서, 청구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 기간을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한 점, 정정보도 내용이 원래의 보도내용을 초과할 수 없고 사실적 진실과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언론의

15) 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9-481.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정정보도청구권 제도는 신속성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정정보도등청구 사건심판규칙이 당사자의 변론참여권과 대심적 구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규정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배상액 산정 규정도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명문화한 것이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 합헌의견을 제시했었다¹⁶⁾.

그러나 정작 동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 조항 및 가처분조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상술한 위헌논의들에 대한 유권적 판단은 없었다¹⁷⁾.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보았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 허위의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체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구제책이며, 청구권의 내용이나 행사방법을 볼 때 일정한 경우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인정·제소기간의 단기간 제한·정정보도 방법도 원래의 보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은 등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고 이는 재판관들의 전원일치의견이었다¹⁸⁾. 반면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 소송 그 자체가 본안소송인데 승패의 판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 입증에

16)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84-485.

17)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341.

18)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1-404.

대해,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고 보아 위헌임을 인정했다¹⁹⁾.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정보도청구 소송 관련 규정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정보도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 규명을 비롯한 위헌 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의들²⁰⁾이 존재한다. 때문에 현행법상의 제도 규정과 그 규정 해석을 통해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보여준 판례,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적용례 등을 통해 규정과 현실을 살펴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언론중재법상의 피해(명예권 중심)구제제도 규정과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정정보도청구권

1. 청구요건 내용과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현행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불가)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정보도청구권은 2005년 법 제정 당시

19) 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4-407.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인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 결정에서의 언론의 위축효과에 관한 분석적 설명으로는, 양재규 (2006). 언론중재법 관련 현재결정(2005헌마165등)에 대한 소고-언론의 위축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통권100호), 9-18.

20) 박용상, 앞의 책, 1026-1029.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다만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 2009년 법 개정에서 확대되었을 뿐이다²¹⁾.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을 도입한 배경적 상황은,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언론사에 대해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동일한 보도매체를 통해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게 하는 권리인 것이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에 의하면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가 훼손된 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의 원인이 된 언론보도 등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체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²²⁾. 그러나 이 개념이 늘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21)

언론중재법[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언론중재법[시행 2009. 8. 7.]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2009년 법 개정 당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법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의 언론보도의 의미를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확대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확대규정된 것이다.

서, 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해당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즉 법원은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em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왔다²³⁾.

다음으로는 그 보도내용이 허위여야 한다.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²⁴⁾.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 바 있다²⁵⁾.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까지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을

22) 전광백 (2012).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149.

2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 52649 전원합의체 판결.

24)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2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28121 판결 등.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²⁶⁾. 즉 법원은 명예 훼손적 보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해당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해 왔다²⁷⁾.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으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법원은 진실성 판단에서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했다²⁸⁾.

그런데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입법당시부터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권리로 위헌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

2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27)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2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등. 한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과학에서의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 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룰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 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과학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은 고려했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권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으로 해석했다²⁹⁾.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하나의 입장으로 둔 채 반론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³⁰⁾,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하나로 보는 견해³¹⁾ 등이 논의되어 왔다³²⁾.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 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³³⁾이라는 점에서 보면,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게재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이미 행해진 허위보도를 진실에 부합하게 교정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권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바 정정보도청구의 소제기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나 불법행위성의 전제적 성립요건인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제소기간이 민법상의 권리보다 단기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764조 특칙 규정의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과는 구분되는 다른 권리라고 할 수 있다³⁴⁾. 즉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구체적 형

29)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1-404.

30) 김재협 (2005).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2015년 봄호(통권 94호), 86-90; 김재협 (2017). 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04호), 88 이하.

31) 김윤정 (20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00호), 27-28.

32) 조소영 (2006).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른바 새로운 권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2호, 192-194; 이수중 (2011).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겨울호(통권 121호), 87; 박용상, 앞의 책, 1026-1029.

3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34) 이동훈(2015).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함의.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100.

태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기한 청구권이라면, 허위의 신문보도로 명예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보도한 자의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구제책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인 것이다³⁵⁾. 따라서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에는 언론사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음으로써 행위의 불법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언론보도의 파급적 효과를 감안한 허위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을 주된 목적으로 두었다는 점을 우선적 의미로 파악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다층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하고자 한 입법 목적을 상기한다면, 정정보도청구권의 새로운 권리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하겠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 인정으로 보호되는 명예의 보호범위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명예권의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적 기능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를 전제로 해야 하고, 따라서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

35) 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1-404.

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³⁶⁾.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판례는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증명의 용이성과 관련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의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⁷⁾. 그리고 현재까지의 과학 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써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그 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

3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37)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증명을 다 한 것으로 판단했다³⁸⁾.

2. 정정보도청구 거부 사유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은 언론사 등이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사유의 존재는 2006년 헌법재판소가 정정보도청구권이 위헌이 아님을 결론 내린 판단 근거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방법을 볼 때 일정한 경우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보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적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³⁹⁾.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사 등이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5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둘째,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셋째,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넷째,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이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 내용에 관하여 원 보도를 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3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구자현 (2011).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694.

39) 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1-404.

원 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정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⁴⁰⁾. 또한 충분한 정정보도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단기준이 되어 왔다. 그래서 법원은 그 후속 정정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으로,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⁴¹⁾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 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⁴²⁾.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 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 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 청구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⁴³⁾.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2호~제4호의 거부사유는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보도 청구에 의해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적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고, 제5호에 규정

4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41) 보도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방법, 원 보도와의 적절한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구자현, 앞의 글, 690].

4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4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 기관의 공개회의와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는 법률로 공개가 규정된 경우와 기관 스스로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도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이런 제한된 보도 자체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부사유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다⁴⁴⁾. 다만 법원은 이러한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 형식으로 보도하지 않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하지 않았다⁴⁵⁾. 한편 현행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언론사 등의 정정보도 거부사유는 2005년 입법 이후 2011년 법 개정으로 문구가 수정된 부분 중, 제2호의 사유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2011년 법 개정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을 이유로 들었다⁴⁶⁾.

2011년 개정 전 언론중재법 규정	2011년 개정 후 언론중재법 규정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그런데 동 조문의 문구의 의미가 단순히 용어를 쉽게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 고민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국어적으로도 ‘반(反)하다’와 ‘다르다’가 포섭하는 범위와 경우가 같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 사실과 반대되는 경우와 그 사실과 다른 경우

44) 전광백, 앞의 글, 151-152.

45)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이 판결은 현행 언론중재법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했던 언론기본법 제49조 제7항의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

46) URL: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12365&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의 인정 범위는 늘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우려가 든다. 간과된 사항이 아니었다면 보도의 자유와 명예권 등의 인격권의 권리충돌적 상황을 조화롭게 규정하고자 했던 규범 조화적 해석으로, 명예권을 보호하면서도 언론사 등의 보도매체들에게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사유를 좀 더 넓혀줌으로써 보도의 자유 또한 더 보호하고자 했던 개정취지를 배경으로 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규정된 정정보도 청구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언론사 등이 그 청구를 수용하지 않아서 정정보도 청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V. 반론보도청구권

1. 연혁

현행 언론중재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은 1980년 언론기본법상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하의 규정으로 처음 도입된 권리로서, 이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방송법 제41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용어 때문에 동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 초기부터 그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1986년의 대법원 판결⁴⁷⁾과 199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⁴⁸⁾에 따라 ‘반론권’으로 정리되면서 1995년 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47)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48)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5-528.

등에 관한 법률⁴⁹⁾ 제16조에서 비로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 반론권 규정이 최초로 입법된 언론기본법 제정 당시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출판법 제11조 규정의 반론권 내용을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⁵⁰⁾도 이 권리의 성격에 관한 해석에 상황적 배경으로 언급될 만하다.

대법원은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되었던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⁵¹⁾. 언론기본법 폐지 후 피해구제 규정들은 매체별 입법으로 분산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된 대상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간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비록 그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독일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49)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96. 7. 1., 법률 제5145호, 1995. 12. 30. 일부개정).

50)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23.

51) 또한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함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이 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고, 언론사 측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질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 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⁵²⁾. 이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유권적 해석이 내려진 이후 법률개정과정을 거쳐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자리매김한 동 권리가 현행 언론중재법 제16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 신문보도에 의해 자신의 명성을 침해받은 자의 개인적 권리로 ‘반론권(droit de réponse)’을 인정할 것을 처음 제안했던 뢰로르(Jacques-Antoine Dulaure) 의원이 제안의 근거로 제시했던 것은, 첫째, 언론에 대한 개인의 보호, 둘째,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로부터의 독자의 보호, 셋째, 언론과 개인 간의 무기평등, 넷째, 형사상 소추에 기한 해결의 불충분성이었다고 한다⁵³⁾. 제한적이긴 하지만 매스미디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이용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장한다는 점과 언론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론권 제도의 존재 의의를 파악하는 견해⁵⁴⁾도 뢰로르 의원의 제안이유와 상통하는 맥락을 보인다. 현재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이러한 의미를 잘 실현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될 수 있을지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된다.

2. 청구요건 내용과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현행 언론중재법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

52)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판례집> 3, 518, 525-526.

53)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20.

54) 박용상, 앞의 책, 1064.

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처럼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청구의 대상이 사실보도에 국한되고,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손해발생의 유무도 묻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로 설명된다⁵⁵⁾. 언론기본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판결⁵⁶⁾에서,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에게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제도이고, 언론사 측에게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도취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야 하고, 이러한 풀이가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⁵⁷⁾, 법원은 소송에서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할 때에 신청취지가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⁵⁸⁾고 했다. 그리고 실제 반론보도문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는, 반

55) 박용상, 앞의 책, 1065-1067.

56)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5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론보도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대상에 비하여 장황하고 길게 작성된 반론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위와 같은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⁵⁹⁾.

‘언론보도 등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지 않았다⁶⁰⁾.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확장이론의 주장⁶¹⁾과 관련 판례가 있었다.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⁶²⁾에서 대법원은,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 등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해야 할 공익이 있으므로 국가 등도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했던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⁶³⁾ 제16조 제7항이 민사소송법 등의 일반 이론상으로는 당사

58) 반론보도등청구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3항

5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60)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61) 박용상, 앞의 책, 1068-1072.

6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63) 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본질인 인격권 보장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사자능력을 부여할 합리성과 정당성이 긍정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현행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를 때, 법령 등에 의해 독자적인 조직과 기능을 가진 관서나 관청,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단체 등은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그 기관·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⁶⁴⁾이기 때문이다.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⁶⁵⁾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⁶⁶⁾.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도 불가피하게 뒤따를 수 있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권리로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따라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반론제도의 취지상, 객관적 허위성 여부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를

6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65)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66)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6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심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⁶⁸⁾.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 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음을 판시해 왔다⁶⁹⁾.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⁷⁰⁾.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되므로, 반론의 대상이 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을 사실적 주장으로 판단했다⁷¹⁾.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도 추상적이며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의 보도가 보통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

6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6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7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7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했다⁷²⁾.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으며,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⁷³⁾.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것처럼,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⁷⁴⁾에서, 대법원은 ①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②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할지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③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허위성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재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

7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7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7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한다고 하였다.

이 반론보도청구권은 직접 언론사 등을 상대로 행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행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중재 전치주의를 적용해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했었지만, 언론중재법에서는 권리행사 기간 이내에는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3. 추후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은 1987년 제정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⁷⁵⁾에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권리로 처음 도입되었다(동법 제20조). 이후 1995년 법 개정⁷⁶⁾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를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로 변경하여 청구권자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그 뒤 언론중재법⁷⁷⁾에서 권리 행사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에서 3월로 연장하면서 현행법 규정에 이르렀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17조는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이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75)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9호, 1987. 11. 28. 제정).

76)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1996. 7. 1., 법률 제5145호, 1995. 12. 30. 일부개정).

77) 언론중재법(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추후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체 필요성을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능을 갖는다고 평가된다⁷⁸⁾.

추후보도청구권은 이와 같이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나 행정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의 보도의 경우 등에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요건충족이 되므로, 구체적인 형사상 조치가 행해지기 이전이라도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란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와 기소 후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말한다. 즉 추후보도청구권의 주체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범죄혐의 시점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 내지 사법부의 무죄판결이 있고 해당 단계가 종결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혐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 등의 처분이나 사건종결이라고 볼 수 없는 기소중지 처분, 무죄증거와 무관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식적 사유에 해당하여 결정된 법원의 면소판결·공소기각 판결·공소기각 결정은 추후보도청구의 사유라고 할 수 없다⁷⁹⁾. 한편 보도된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무죄선고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 대한 추후보도 청구가 가능하다.

78) 박용상, 앞의 책, 1172.

79) 법원의 면소판결·공소기각 판결·공소기각 결정의 경우는 유죄판결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그 심판 사유 마다 인정 필요성이나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박용상, 앞의 책, 1174).

V. 손해배상청구

1. 규정 내용

언론중재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권의 침해 를 입은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인 제750조 규정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라고 할 수 있 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 하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 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 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상의 이 손해배상청구 규정은 구 조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발생요건에 대한 규정과 손해배상청 구권이 발생한 후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명예훼손인 경우는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비해 그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지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⁸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인 정하더라도 실제 산정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논란이 적잖다. 이러한 사

80) 양삼승 (1993).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한 연구-정정보도의 구 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1993년 가을호. [전자매체본]. URL: https://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8&idx=537&sub_idx=4120&m=read&f=&s=

실적 어려움과 실제 산정된 배상액수, 효과의 면에서의 실효성 등의 논란은 요즘 입법안으로 발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⁸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은 손해 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나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이라는 점이다⁸²⁾.

2. 위헌 논의

2005년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규정에 대해서 위헌소원을 청구했던 청구인 측에서는, 동 규정이 인격권침해에 대하여 언론사의 귀책사유로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을 허용하는 한 위헌이고, 징벌적 손해를 의미하게 될 정도의 고액의 배상을 인용하는 등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이유를 제출했다⁸³⁾. 청구인측이 주장한 위헌이유에 의하면 결국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자체를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과실책임주의를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법제에서 정리된 과실론은 객관적 과실설의 입장이 통설적 입장이어서, 법률상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면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되는 구조다. 객관적 과실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81) 언론중재법개정안으로는 2020년 정청래의원안, 2021년 최강욱의원안 등이 있다.

82) 이승선 (2021).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점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 이중처벌·언론 자유 위축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 <신문과 방송>, 3월호, 커버스토리 11.

83) 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3-475.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⁸⁴⁾. 즉 언론사의 경우에는 보도직업에 종사하는 언론인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중과실이 요건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 규정의 경우와 같이 형평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특별한 법익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제한된다. 따라서 언론중재법 위헌소원사건에서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 성립요건 자체를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서 규정해야 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중재법 제3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규정이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공익보도의무와 신속보도의 필요성으로 인한 불가피성이나 완화방법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성립요건의 차원이 아니라 형법상의 구조처럼 위법성 조각을 위한 ‘공익성과 진실 또는 상당성의 증명’ 문제로 다루거나⁸⁵⁾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고려요소로 작동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765조⁸⁶⁾는 배상액의 경감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동 규

8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85) 손해배상액에 관한 분쟁을 다룬 판결들에서 대법원은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도 수용해 오고 있다. 즉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혹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김재형 (2009),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인권과 정의>, 제399호, 98.

86)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정에 의하면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을 번복한 결정⁸⁷⁾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었던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실화의 경우에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그 실화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실화피해가 모두 피해자의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결과에가 위헌논의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즉 실화책임법은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민법 제750조의 일반원칙과 달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였고,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책임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했던 것이었다. 실제 화재 피해 확대원인들은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실화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 그 화재 및 연소로 인한 피해를 모두 실화자에게 배상시키면, 실화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기 쉽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입법자가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실화자의 부담을 구제하는 방법은 경과실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여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실화자의 배상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이 실화피해자의 보호라는

87) 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 <판례집> 19-2, 203, 203-214.

면에서 보면 실화 및 연소의 피해에 대하여 실화자의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전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실화 및 연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부 실화자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경감시킴으로써 실화자의 가혹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결정의 이유로 판시하였다⁸⁸⁾.

결론적으로 언론중재법 제3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에 관한 위헌 주장의 논지에 대해서 살펴건대, 손해배상책임을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자는 것은 언론사 등을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위헌성을 담게 되는 위헌적 논의가 될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실화책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상기해 볼 수 있는 유사한 경우가 된다고 하겠다.

3.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

언론중재법 규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명예권 침해 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문제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예훼손사건에서의 손해배상은 명예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 배상이다.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쉽지 않은 곤란한 부분이어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명확한 산정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

⁸⁸⁾ 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 <판례집> 19-2, 203, 209-211.

어 왔다⁸⁹⁾. 실제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⁹⁰⁾. 이렇다보니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게 되곤 했던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사정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하기도 했다⁹¹⁾.

언론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언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적 기능’이 주된 것이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내지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⁹²⁾.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이러한 위자료의 본질적 기능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해 왔다.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 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

89) 김재형, 앞의 글, 103.

9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9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92) 노만경 (2011).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통권 121호), 11.

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고 판시하였다⁹³⁾. 그러나 한편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피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⁹⁴⁾,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했다⁹⁵⁾.

위자료의 성질에 비추어 언론보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① 불법행위인 언론보도의 내용, ② 피해자 측 사정, ③ 가해자 측 사정, ④ 언론보도 이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⁹⁶⁾. 구체적인 참작사유로는, ①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 매체의 종류(신문인지 방송인지 등), 기사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진실성 여부, 공익성 유무와 정도, 비방성과 악의성의 정도, 기사의 신속성 정도(일간·주간·월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해의 종류와 성격, 보도의 사회적 영향, 영향의 즉각성·지속성·회복곤란성의 정도 ② 피해자 측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재산 정도, 교육 정도, 신분, 사회적인 위치, 지명도 등,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규모, 영업실적, 지명도, 신용도 ③ 가해자 측 사정으로,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재산·재정상태, 보도이후의 태도 ④ 보도 이후의 사정으로 언론이 기사를 정정·취소하였는지 여부와 판결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함께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 수 있다고 한다⁹⁷⁾.

9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94)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등.

9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96) 허만 (2000).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 120.

97) 노만경, 앞의 글, 12.

Ⅵ. 이른바 금지청구권

1. 규정내용

언론중재법 제30조 3항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 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 피해자는 침해정지나 침해예방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입법 이전인 1980년대부터 이미 하급심법원들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청구권을 인정했었고⁹⁸⁾, 대법원은 1996년에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처음으로 사전구제수단으로 광고중지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에 대해 명시적인 판시를 한 바 있다⁹⁹⁾. 하지만 인정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권리의 인정근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던 바, 2005년 언론중재법에서의 규정도입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일종인 보도에 대한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위반성 여부가 문제제기 되기도 했다.

종래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한다는 견해와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한다는 견해가 나뉘었고, 가장 큰 구분의 실익은 행사요건 상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가의 여부였다¹⁰⁰⁾.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규정을 보면, 제30조 손해배상

98)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4. 선고 87카53922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2. 27. 선고 87카36203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6. 20. 선고 88카28987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16. 선고 92카44613 등.

9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규정을 앞에 두고 ‘제1항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바대로라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이 규정한 이른바 금지청구권(침해정지청구권과 침해예방청구권)은 명예권 등 인격권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른바 금지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추가적 장치로서 규정된 것이 제4항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이다. 그리고 이 규정으로부터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청구권이 ‘기사삭제청구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금지청구는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언론보도 등의 금지청구권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¹⁰¹⁾. 따라서 언론중재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은 사후적 규제이기 때문에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는 규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규정을 근거로 하여 방영금지가처

100) 전광백, 앞의 글, 137-138; 김재형, 앞의 글, 103-104.

101) 헌재 1996. 10. 4. 93헌가13 결정 등 <판례집> 8-2, 212, 224.

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가를 심사했던 사건¹⁰²⁾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즉 검열의 주체가 행정권이 아닌 사법부라는 점에서 헌법상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의 과잉적 제한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호수단으로서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이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한 정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어 법익 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¹⁰³⁾.

대법원도 금지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허위비방광고행위 금지와 관련된 1996년 판결에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실시했다. 판례에 의하면¹⁰⁴⁾, 인격권은 성질 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특히 명예권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

102) 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결정 <판례집> 13-2, 229.

103) 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결정 <판례집> 13-2, 229, 233-236.

10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¹⁰⁵⁾. 하지만 동시에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제도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관해서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 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지만,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제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¹⁰⁶⁾.

한편 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¹⁰⁷⁾. 그리고 대법원은 허위기사보도로 자신

10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판결.

106)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¹⁰⁸⁾. 기사삭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각 기사의 내용 중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사의 일부삭제만을 명하는 경우 원래 기사의 취지가 본래의 뜻과 달이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¹⁰⁹⁾.

기사삭제청구권은 그 자체로 기사 자체의 잘못을 확인해 주거나 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파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원보도가 삭제되는 것을 실제로 더 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명예권 등의 인격권에 대한 향후 침해요소의 근원을 제거하는 적극적 권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⁰⁾.

VII. 권리에 관한 분쟁해결절차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 등을 행사한 경우, 언론사 등이 그 청구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절차와 법원에서의 정정보도청구소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조정

먼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

10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0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10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10) 양철한 (2014).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하여.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통권 제132호), 51.

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8조~제23조)¹¹¹⁾.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경과 전)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2005년 언론중재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종래보다 조정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조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이를 소명(疏明)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棄却)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

111)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언론중재법 제19조 제9항),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에 정하여 그에 의한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10항).

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조사 실행의 필요성은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 확보 절차라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각하(却下) 결정을 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 기각결정을 하며,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 결정을 한다. 그 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처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 등을 피고로 한다.

그리고 위의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조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언론중재법 제 19조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조정신청 요건〉¹¹²⁾

신청인	조정대상매체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일반단체, 공공기관, 회사 등 -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언론보도등에서 언급되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 방송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 신문 - 인터넷 뉴스 서비스 (포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는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보도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무혐의나 무죄로 행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중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상 권리관계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을 대신하여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의 조력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결과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분쟁해결방식이다. 제3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술한 조정과 중재는 유사성을 지닌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다. 즉 중재도 제3자가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유사하지만, 제3자의 판정에 당사자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¹¹³⁾. 피해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민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피해구제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가해자의 형사

112) URL: <https://www.pac.or.kr/kor/pages/?p=55>

113) 홍승희 (2009). 명예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10-11.

처벌을 통한 심리적 만족에 그치게 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의 적극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¹¹⁴⁾. 이러한 실익적 의미에서 분쟁해결방안과 관련된 현대의 추세는 대체적 해결방안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일찍부터 ‘중재제도’를 운영해온 언론중재위원회의 해결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할 만 하다. 중재제도는 소송으로 인한 비용부담이나 시간적 손실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마무리하여 신청인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피신청인에게는 조속한 분쟁해결로 보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분쟁해결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¹¹⁵⁾.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제25조). 이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언론중재법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는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2005년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했던 청구인측은 당시 언론중재법 조항 중 중재관련 규정에 대하여, ‘중재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통상 중재판정의 경우 인정되는

114) 박정난 (2020).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봄호(제66호), 153.

115)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64.

취소의 소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¹¹⁶⁾. 당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적법요건이 미비되었음을 이유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재는 당사자 간 최종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중재합의가 없었다거나 중재인 선정 등 기타 중재절차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 측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유권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반영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 신설의 경우로서,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던 것이 그것이다¹¹⁷⁾.

3.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통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언론중재법상의 조정 및 중재절차가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지의 여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된 1981년 이래로 2020년까지의 사건처리현황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로 확인해 볼 수 있다¹¹⁸⁾.

그동안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40년간 신청된 총 건수 64,759건 중에 15,153건(23.4%)이 '조정성립'되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2,783건의 직권중재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중 1,622건

116)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73-475.

117) URL: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91581&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118) URL: 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bn=2769&m=read&nPage=1&cate=PD01&f=TITLE&s=

(58.2%)은 동의되었고, 1,161건(41.7%)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되었다. 조정불성립 건수는 총 8,634건(13.3%)으로 조정성립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조정절차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구제율은 7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정절차를 통한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인정될 만 하다.

반면에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시작된 중재절차는 첫해인 2005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2009년도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재청구건수가 100건을 넘었던 해는 2009년(111건), 2011년(113건), 2013년(190건)이었고, 2013년을 정점으로 이후부터는 급속히 줄어들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신청건수가 1건도 없었다. 중재제도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현상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40년간의 총 신청건수의 침해유형으로 보면, 조정사건의 경우 총 64,759건 중에 명예훼손 유형이 61,377건(9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 1,290건(2.0%), 신용훼손 877건(1.4%), 프라이버시 침해 373건(0.6%) 등의 순서였다. 중재사건의 경우에도 총 634건 중에 명예훼손 유형이 587건(9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상권 침해 34건(5.4%), 프라이버시 침해 4건(0.6%), 재산상 손해 4건(0.6%) 등의 순서였다.

4. 소송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6조). 이 소송제기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¹¹⁹⁾. 언론중

재법 제정 당시에는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했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2006년 헌법 재판소가 신문사업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¹²⁰⁾, 2009년에 법 개정을 통해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본안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언론중재법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27조).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28조는 불복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 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언론사 등이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언론사 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 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 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

119)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0)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4-407.

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 제30조에 의하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재판에서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제31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은 법원에 대해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모든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제29조).

VIII. 시정권고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의 보도를 심의하고,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고지하여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적 조치다¹²¹⁾.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부터도 정기간행물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성폭력 피해자,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목격자, 신고자, 증인 등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사생활 침해 내용 ▲마약의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방법의 상세보도 ▲자살자 신원공개, 자살방법 상

121) 언론중재위원회 (2021). <시정권고 편람>.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7.

세묘사 등 인권침해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한다¹²²⁾. 그런데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시정권고 기능을 더 강화하는 규정으로 정비하여, 개인적 범의사항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범의에 대한 침해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정 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에도 각 개별법에서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를 추가한 것이었다¹²³⁾.

2005년 언론중재법 제32조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소원이 제기되었는데, 청구인측은 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권한을 강화한 것은 대의적 헌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에 대한 일반적 감시·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권립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¹²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32조의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시정권고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¹²⁵⁾. 적법요건 결여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시정권고제도의 강화규정들이 위헌성을 지녔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제도의 효력이 권고적 효력을 가졌을 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 언론중재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122)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65.

123)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판례집> 27-1하, 57, 63.

124)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404-407.

125)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결정 등 <판례집> 18-1하, 337, 341.

내용에 대한 이익집단의 시정권고 신청남발 우려의 시각들이 있었다¹²⁶). 즉 시정권고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언론의 자유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의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공표에 의한 심리적 부담을 받게 되고,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었던 것이다¹²⁷). 이후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하였고, 현행 언론중재법까지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 남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삭제된 이 개정법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이를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소원이 제기되었다¹²⁸).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언론사 등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언론 형성 및 언론의 공

126)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65.

127)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판례집> 27-1하, 57, 63.

128)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판례집> 27-1하, 57, 64(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동 조항이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아 액세스(access)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액세스(access)권은 그 주체, 객체, 내용 등,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실질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시정권고를 규정하지 않아 당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보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적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인정했다. 제3자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간 균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심의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공정한 언론보도나 언론의 공적책임을 폭넓게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언론사 등의 보도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신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누구나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언론사 등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한 것이다. 그런데 시정권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언론사 등에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시정요구나 참여의 기회를 봉쇄당하는 것은 아니며,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청원법 제3조, 제4조),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언론중재법 제6조, 방송법 제35조). 그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므로(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7조의2), 동 조항이 피해자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아닌 사람에게 시정권고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를 통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고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언하였다¹²⁹⁾.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위원회 구성 이래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인적 법익¹³⁰⁾·사회적 법익¹³¹⁾·국가적 법익¹³²⁾에 관하여 심의한다. 현행 시정권고제도에 대해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32조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 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보도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보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익침해가 분명한 보도에 한해 시정권고

129) 헌재 2015. 4. 30. 2012헌마890 결정 <판례집> 27-1하, 57, 64-65.

130)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공익신고자·부패행위신고자·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단순 고소·고발사건 보도금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금지 등(언론중재위원회 (2021). <시정권고 편람>.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8)

131) 보도윤리 준수, 인종·국적·지역·성별·종교·나이·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차별표현 금지, 재단보도 시 피해자 및 가족의 인격권 보호,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설명 금지,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금지, 자살사건에 대한 상세한 묘사 금지, 마약류에 대한 상세보도 금지, 충격 및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보도 금지, 기사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 기사본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자극적인 제목 사용 금지 등(언론중재위원회 (2021). <시정권고 편람>.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8)

132)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 금지, 국가기밀 누설 금지 등(언론중재위원회 (2021). <시정권고 편람>.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8)

를 하도록 운영한다면 제도의 기능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IX. 맺는 말

헌법상의 모든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원칙이므로, 명예권도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헌법상의 명예권 보호는 보호대상으로서의 명예의 개념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침해된 명예권을 어떻게 구제받도록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망라하는 구조와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이론상 헌법규정이 사인 간에 직접적 효력을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통설적으로 간접적 효력설의 입장에서 해석되는 바, 개인의 명예 보호는 헌법이 직접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예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과 형법상의 일련의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을 두어 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로서 언론중재법이 도입되었고, 소송이 아닌 구제제도로 언론중재절차와 새로운 권리들을 제도화했다. 특히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관해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새로운 피해구제제도들은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구조화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구제방법에 관한 선택지를 다양화했다. 다만 언론중재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인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의 조화는 각 구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엄격한 위헌성 심사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 위헌성 시비는 새로운 권리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한 보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적 제한성 여부,

제도의 미비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위헌심사를 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각 구제제도의 성립요건과 효과의 구체적 적용기준과 내용은 법원의 관련 판례에서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었다. 때문에 언론중재법상의 각 구제제도들은 규정 그 자체는 물론이고 관련된 판례에서의 주요한 내용들까지 정리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구제를 위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아 왔다. 또한 헌법적 권리로서의 명예권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명예권의 침해에 관한 구제수단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 제도가 언론중재법상의 피해구제수단들이다. 그리고 그 제도적용의 과정에서 언론사와 그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간의 조화적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활동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본연적 기능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기술이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을 빠르게 만들어 내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언론보도매체의 변화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결국 언론보도매체 환경의 변화는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의 양상과 정도도 변화하게 만들게 된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명예훼손죄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인 것으로 평가되고,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도 형사조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등, 단순히 정보통신망 이용 시의 문제로만 분류해내서는 안 되는 새로운 언론의 문제들과 표현의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한 태양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정체를 해서는 안 되는 살아 있는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무엇이 명예인가를 고민했던 것처럼 이제 무엇이 언론인가를 다시 고민 하면서, 발생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개인의 명예권을 지켜주는 보루로서의 구체책을 법률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김옥조 (2006).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재완 외 (2017). 〈미디어와 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 박정난 (2020).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신건호 (2005).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서울: 전국언론노동조합
- 신 평 (2004). 〈명예훼손법〉. 서울: 청림출판
- 안상운 (201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경기: 살림출판사
- 허 영 (2021).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 언론중재위원회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09). 〈개정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전자자료] URL: https://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idx=865&field=pdf_nm

〈논문〉

- 강병국 (2005). 명예훼손 위법성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 언론피해구제법 해설. 〈신문과 방송〉, 통권 410호.
- 구자현 (2011).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 〈정의로운 사법: 이 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 김윤정 (20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통권 100호).
- 김정현 (2010).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가천법학〉, 3권 3호.
- 김재협 (2005).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2005년 봄호(통권 94호).
- _____ (2007). 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언론중재〉, 2007년 가을호(통권 104호).
- 김재형 (2009).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

- 차. <인권과 정의>, 제399호.
- 노만경 (2011).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통권121호).
- 박아란 (2019) 언론 자유와 기사삭제 청구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미디어 이슈>, 5권 5호. [전자자료] URL: 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292&contents_id=000344023AB2E88D602442D75B5599A6
- 박정난 (2020).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봄호(통권 제66호).
- 양삼승 (1993).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한 연구-정정보도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하여. [전자자료] URL: https://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9&idx=537&sub_idx=4120&m=read&f=&s=
- 양재규 (2006). 언론중재법 관련 현재결정(2005헌마165등)에 대한 소고-언론의 위축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통권100호).
- 양철한 (2014).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하여.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통권 132호).
- 오영권·김명섭 (1998). 반론권의 예외사유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언론중재>, 1998년 가을호(통권 68호).
- 원혜욱·김자영 (2016).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비교형사법연구>, 18권 4호.
- 이동훈 (2015).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함의.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 이승선 (2021).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점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 이중처벌·언론 자유 위축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 <신문과 방송>, 2021년 3월호, 커머스스토리 11.
-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 이수중 (2011).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2011년 겨울호(통권 121호)
- 이재진 (2011). 주요 국가의 언론피해 구제방식 비교 고찰. <언론중재>, 봄호(통권 118호).

- 이재진·상윤모 (2008). 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안 연구 :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우. <방송연구>, 2008년 여름호(통권 제66호).
- 장호순 (2003).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통권 88호).
- 전광백 (2012).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홍익법학> 제 13권 제3호.
- 전찬희·지용수 (2012).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 조소영 (2006).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른바 새로운 권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2권 제2호.
- 허 만 (2000).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주법률논단>, 1집.
- 홍승희 (2009). 명예관련 범죄와 형사조정제도.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ABSTRACT

**Legislation and the reality of damage relief based on
defamation**

-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Cho, So Young
Professor, Law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honor” protected by the right to honor, included in the general moral right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social evaluation” of a person or his or her personality, that is, objective and external valuation. The legal system that protects the right to honor begins with the Constitution, which cover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s fundamental rights in Article 21. At the same time, it explicitl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infringing “the honor and rights of others” as a specific limit that cannot be overcome by press freedom. In addition, as a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this freedom, “honor” can be viewed as a broader concept than the “protection of honor” under criminal law. Moreover, the scope of defamation punishable by defam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onor may be different.

Next, there are related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the Criminal Act, which are generally corporations that specify the protection of personal honor. What was newly introduced here were the damage relief legislations in case of defamations caused by media report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press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right to

claim a report as a new right. Under the current law, systems for relieving media damage, including punishment regulations for cyber defamation, have become more diverse, with each system having different requirements and effects. Therefore, a person who was harmed by media reports can choose a remedy that considers each system's requirements and effects. In terms of these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applic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an be quickly and easily remedied at a low cost. Moreover, various right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have been established as new options for victims because these rights are incorporated into each requirement.

Since its establishment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n the Basic Media Act in 1981, the Press Arbitration Act underwent 3 revisions following the Press Arbitration Law in 2005 and the enactment of the media damage relief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Arbitration Act has continued to show improvement, centering o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role. Therefore, this article on defamation and damage relief mainly discusses the Press Arbitration Act, the basis for the activitie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at is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study's purpose is to summarize the unconstitutional discussions about the damage regulations that were not judged in the case of the un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various regulations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enacted in 2005.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all provisions except for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request for correction of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al disposition, citing that they lack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r the lack of directness. This decision was reached because the claim of

unconstitutionality was not subject to judg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urrent Press Arbitration Law (right to request correction information, right to report counterargument, right to request further reporting, right to claim suspension of infringement and prevention of infringement, and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application process were examined throug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reality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etc. We would like to summarize the 40th anniversary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suggest a starting point for a discussion about improvements for the future.

Keywords: Press Arbitration Act, Right to Request Correction Information, Right to Report Counterargum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Correction Recommendation System

[논문투고일 2021. 6. 21. 논문수정일 2021. 7. 25. 게재확정일 2021. 7. 27.]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이 주 희*

변호사, 변호사 이주희 법률사무소

■ 국 문 초 록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 구제 수단과 사후 구제 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는 사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보다는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정리가 요청된다.

본고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용된 결정문과 기각된 결정문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판례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사전금지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II), 위 요건들이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인용 결정(III)과 기각 결정(IV)을 살핀다. 이

* joolee0627@gmail.com

후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한다(V).

주제어: 명예훼손, 사전금지청구권, 사전 구제 수단, 표현의 자유, 행사요건

목 차

- I. 서론
- II.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 방법
 - 1. 사전금지청구권의 요건
 - 2. 사전금지청구권의 행사 방법
- III.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인용 결정문 분석
 - 1.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결정
〈이휘소 박사 출판등금지가처분 사건〉
 -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우유 비방광고 중지 사건〉
 - 3. 서울서부지방법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결정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기술하여 출판한 사건〉
 - 4. 서울지방법원 1997. 10. 10. 선고 97카합2923 결정
〈김대중 X파일 사건〉
 - 5.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선고 2004라439 결정
〈영화 ‘실미도’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 6.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라1020 결정
〈돌발영상 불만 엮기 사건〉
 -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7카합1302 결정
〈추적 60분 보복폭행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카합2184 결정
〈내열 강화유리 용기 사건〉
 - 9. 대구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2카합161 결정
〈개인택시조합 서적인쇄배포금지 가처분 사건〉
 -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카합1661 결정
〈‘일베’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 삭제 사건〉
- IV.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기각 결정문 분석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카합3242 결정
〈백혈병 진료비 과다청구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카합1003 결정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가처분 사건〉
 -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카합823 결정
〈친일인명사전 게시금지가처분 사건〉
 -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1카합297 결정
〈‘트루맛쇼’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4. 선고 2013카합339 결정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사건〉

-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4카합80285 결정 <영화 ‘청솔학원’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카합778 결정 <부당하고 명예훼손등 금지 가처분 사건>
-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7카합81063 결정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 10. 대법원 2019. 3. 6. 선고 2018마6721 결정 <영화 ‘JSA’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 V.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 판단기준
 - 1.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검토 순서
 - 2. 판례의 판단 기준 경향
- VI. 결론

I. 서론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다. 우리 판례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을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권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¹⁾) 또는 명예훼손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²⁾)을 구할 수 있고,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³⁾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

1)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구제 수단과 사후 구제 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피해자는 사전 구제 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후 구제 수단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기사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⁴⁾ 피해자는 주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에 명예훼손 피해구제수단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사후 구제 수단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는 사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보다는 활발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정리가 요청된다.

그러나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실제적인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즉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 명예훼손이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된 결정문과 기각된 결정문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판례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사전금지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Ⅱ), 위 요건들이 사실관계에 어떻

4) 전광백 (2012).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홍익법학>, 13권 3호, 164.

게 적용되었는지 인용 결정(Ⅲ)과 기각 결정(Ⅳ)을 살핀다. 이후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한다(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⁵⁾ 및 케이스노트 사이트⁶⁾에서 ‘명예훼손 사전금지처분’ 등으로 검색하여 추린 20건의 판례이다. 해당 20건의 판례 중 인용 결정은 10건, 기각 결정은 10건으로 우리 판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준 적용의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판례를 많이 분석하기로 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판례들은 모두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20건의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요건에 맞추어 정리하였고, 실무상 찾아보기 쉽도록 임의적으로 〈○○○○사건〉으로 이름 붙였다.

Ⅱ.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 방법

1. 사전금지청구권의 요건

명예에 대한 보호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즉,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 전반에 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⁷⁾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표현의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6)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7) 김재형 (2004).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339호, 69.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용된다.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하는 것인바,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유업계의 비방 광고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⁸⁾고 판시한 것처럼,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⁹⁾

이처럼 대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를 허용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사전금지청구권의 적용요건을 살펴 보면,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닐 것 또는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닐 것, ③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것, ④ ③의 경우,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않을 것, ⑤ ③의 경우, 사전금지가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일 것으

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9) 권태상(2020).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 60950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9권 2호, 236.

10)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

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①요건과 ②요건을 함께 판단하기도 하므로, 위 다섯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사전금지청구권의 행사 방법

보전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현상을 동결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잠정처분인바¹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사전금지청구는 주로 보전처분인 가처분을 통하여 행사된다. 이하 보전처분의 요건을 중심으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의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핀다.

가. 피보전권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가처분을 통하여 행사하고자 할 때,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이다. 인격권이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침해받지 말아야 할 고유의 권리를 말하며,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에 근거한다.¹²⁾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보전권리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표현 내용이 허위사실적시인지 아닌지 여부 및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진다. 즉, 표현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명예권을 포함하는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할

11) 심승우·이혜민 (2013). 보전처분의 남용 및 해결방안. <민사집행법연구>, 9호, 227.

12) 심미선 (2020).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6권 2호, 6.

수 있다. 또한 표현 내용의 공익성도 중요하다. 표현 내용이 사실이면서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청구하는 신청인은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닌 허위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도 아니며,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우월한 가치에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나.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¹³⁾ 제2문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현저한 손해는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이는 직접 또는 간접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그 밖의 정신적인 손해와 공익적인 손해를 포함한다.¹⁴⁾ 급박한 위험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위험을 말하고, 이는 현저한 손해와 병렬적인 개념이 아니라 손해를 생기게 하는 전형적인 예로 이해되고 있다. 보전의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현저한 손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¹⁵⁾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살필 때 보아야 하는 요건은,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13)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14)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마424 결정

15) 장두영(2016).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실무적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12호, 398-399.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것, 사전금지가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일 것은 보전의 필요성 항목에 해당한다. 즉, 해당 표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도록 중대하고 명백하게 훼손되고, 가처분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시급하게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요구되는 소명의 정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의 입증책임은 모두 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만, 가처분에서의 소명은 증명보다 증명도가 낮은 것으로서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는 상태를 말한다. 보전처분에서는 보전처분의 긴급성과 임시성이라는 특질에 기하여 사실인정에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소명으로 충분하도록 하고 있다.¹⁶⁾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것처럼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나,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수정 등을 하게 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본안판단에 가깝게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에 판례에서는 ‘만족적 가처분’¹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소명의 정도를 다른 가처분사건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해당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가처분만으로도 본안판결에 가까운 채권자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만족적 가처분의

16) 정선주 (2009). 가처분절차에서 소명. <민사소송>, 13권 2호, 243.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1카합297 결정 등 참조.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중극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신청인으로서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만족을 얻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심리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의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고 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²⁰⁾

라. 간접강제의 허용 여부

간접강제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²¹⁾에서 정하고 있는바,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

18) 위 결정.

19) 민사집행법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

21)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 의무 및 상당한 이행 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집행 방법을 말한다.²²⁾

채무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의 경우 대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접강제를 명하는 외에는 달리 강제집행의 방법이 없으므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가 많다.²³⁾ 간접강제는 가처분명령의 내용, 채무자들이 단기간 내에 이에 위반할 가능성과 이에 위반할 경우에 예상되는 채권자들의 피해 및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를 인용한 결정과 기각한 결정의 경우로 항을 나누어, 인용 결정의 경우 위 요건들의 적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기각결정의 경우 위 요건 중 어떤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결정이 나왔는지를 분석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Ⅲ.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인용 결정문 분석

1.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결정

〈이회소 박사 출판등금지가처분 사건〉

가. 초상권 침해 부분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해당사항 없음

22) 유아람 (2011). 간접강제의 법리와 실무상 문제. <민사집행법연구>, 7호, 200-201.

23)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선고 2004라439 결정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이휘소의 유족들에게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휘소는 공인으로 공공의 이익이 해당됨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설 이휘소” 상권 135면에 이휘소와 신청인(유족)들의 가족사진 1매를 게재한 것은,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신청인들이 나오는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로 신청인들의 초상권 침해한 것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신청인들의 초상권(명예)의 보호 정도가 높음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신청인들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므로 삭제하지 않고서는 위 소설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안됨.

이 사안은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그의 가족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에 관하여 이휘소의 유족들이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으로, 우리 법원은 가족사진의 경우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휘소는 이미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이휘소 가족의 초상권은 침해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휘소에게는 공공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

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²⁴⁾고 판단하여, 이휘소 가족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없지만, 이휘소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경우, 표현 가치보다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사전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닌 경우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서문 ‘작가의 말’에서 “개인의 최고 명예랄 수 있는 노벨상마저 포기하고 조국의 핵개발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채 귀국했던 천재 물리학자” 및 “모든 영화를 버리고 조국으로 달려와 핵개발을 완료하려 했던 이휘소” 부분은 진실이 아님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판단 내용 없음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서 위 소설로 인하여 이휘소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판금지가 인정됨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이휘소는 우리나라에서 핵개발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휘소의 삶을 실제와 현저하게 달리 묘사하여 이휘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위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안됨

이 사안은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서문인 ‘작가의 말’에서 이휘소가 노벨상을 탈 날이 머지않았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로 묘사된

24)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바, 우리 법원은 이휘소는 우리나라에서 핵 개발에 관련한 적이 없었기에 해당 표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소설의 서문이라고 하더라도 소설의 실제 모델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소설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기에, 서문에서 소설의 실제 모델에 관하여 기술할 때에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휘소의 삶을 실제와 현저하게 달리 묘사하였기에 이휘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이휘소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인 신청인들이 위 이휘소의 명예훼손 및 신청인들의 경건 감정의 침해를 이유로 이 부분의 삭제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사안에서는 소설과 소설 서문을 구분하여 판단하면서, 소설 서문은 소설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허구가 허용되지 않기에, 실제와 다르다면 삭제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²⁵⁾

〈우유 비방광고 중지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광고내용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기에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우리나라 우유업계가 피고(A 분유)의 도발로 ‘광고 전쟁’에 빠짐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원고(B 분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음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피고는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25) 이 사건은 가처분 사건이 아니라 본안 판결인 바, 본안판결에서도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 수단으로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판시하여 함께 살핀다.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 인정됨

이 사건은 A 분유 광고에서 B 분유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들어갔다고 비방한 광고내용이 문제 된 사안으로, 우리 대법원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 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우리나라 우유업계 전체가 이른바 ‘광고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피고의 광고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A 분유)가 원고(B 분유)를 비방하는 광고를 재현할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자행할 위법한 광고로부터 그 명예·신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광고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대법원은 A 분유 광고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이러한 허위광고로 인하여 오히려 우유업계가 광고전쟁에 빠졌기에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위 허위·비방광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광고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결정
〈특정 종교를 사이버로 기술하여 출판한 사건〉

요건	사안
<p>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p>	<p>“(신문명 생략)가 창간된 이후로 ○○교의 ●●●교주, ○○교, ○○교의 기관들, ○○일 등을 비판해 본 일은 결코 단 한번도 없고”이로 인하여 “창간 준비 때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사실의 적시가 허위내용이었음을 자인하고 있음</p>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제10장 공개질의서 부분은 ●●● 아들들의 사생활 내용(이혼, 군대를 가지 않은 내용)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없음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책이 전국서점에 배포되고 각종 일간지에 이 사건 책의 광고가 게재되어 현재 계속되는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게 되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위 부분에 대한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금지

이 사건은 특정 종교인을 사이버로 기술한 출판물에 관하여 신청인인 특정 종교인이 출판물에 대하여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우리 법원은 피신청인인 출판물의 저자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허위인 내용을 자인한 부분 및 특정 종교인의 아들들의 사생활 내용과 같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는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위 출판물에 관하여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종교인을 사이버로 기술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분석 및 그 분석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는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출판물에서 그 종교인을 단정적·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이버라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그 종교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명백하게 허위인 부분이 존재하거나 매우 사적인 영역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서울지방법원 1997. 10. 10. 선고 97카합2923 결정 <김대중 X파일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김대중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김정일, 김대중 당선 원하고 있다”, “김정일, 김대중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 “김대중씨 공산당활동 얼마나? 몇 번 체포됐나? 그 진상?” 는 내용은 진실이 아님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 저작 동기과 경위, 저작자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후보인 신청인(김대중)의 사상을 공정하게 논평하는 데에 표현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행적에 대한 일부 검증되지 아니한 문헌이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의 회담 기록 등에 기초하여 신청인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데 그 표현의 중점이 있어 공공의 이익이 아님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은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하였음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은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예방청구권이 인정됨

이 사안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 후보자인 김대중의 사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김대중 X파일’이란 기사를 게재한 사안으로, 우리 법원은 그 주간지 및 저작물의 발행으로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후보자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후보자는 그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 부분 및 저작물의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배포 등

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예방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위 기사를 게재한 단행본의 발행,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의 정기간행물예의 게재 및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의 특징은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치 형량의 방법으로는, 언론기관의 보도나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신청인 김대중의 사상과 관련한 부분은 진실이 아니었고, 이 표현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신청인을 비방하고자 하려는 목적이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었기에 신청인의 사전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선고 2004라439 결정

〈영화 ‘실미도’ 상영금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광고·홍보용으로 만든 공식 홈페이지에는 ‘신문’이라는 항목, 영화선전물, 각 신문광고, 디브이디세트의 첨부물 ‘About Fact’에서 역사적 사실에 배치되는 묘사를 함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는 상업영화에 관한 광고·홍보의 경우, 순수한 창작소설 등을 토대로 한 영화에 비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상이한 광고·홍보로 인하여 그 모델이 된 사람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영화 실미도 중 684부대 훈련병들의 모집경위에 관한 장면 등의 경우, 역사적 사실에 배치되는 묘사를 하여 망인들 및 유가족들의 인격권 침해하고 있음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실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영화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상업적 광고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공식홈페이지가 운영되고, 디브이디세트 및 비디오세트 제작·판매가 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

이 사안은 영화 실미도의 내용 중 민간인 모집방식을 마치 교도소 모집방식으로 만들어 실제 모델이 된 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실미도 모델이 된 사람들의 유족들이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 결정에서 우리 법원은 광고·홍보와 영화는 표현의 보호범위가 다름을 명시하였다. 광고·홍보의 내용이 예술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화와 다름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①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 하는 ‘상업 영화’의 각 장면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지 여부와 ② 위와 같은 영화 내용이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차원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업 영화에 관한 광고·홍보의 경우에는 순수한 창작소설 등을 토대로 한 영화에 비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상이한 광고·홍보로 인하여 그 모델이 된 사람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용인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고 보았다. 이에 판례는 실미도의 영화상영가처분의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를 마치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홍보의 영역은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특히, 이 결정은 표현 가치와 명예를 이익형량 하는 부분에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 영화에 있어서 실제 상황과 배치되는 사실 묘사로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영화 내용상 실제상황과 혼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헌법이 보호하는 예술적 자유 영역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실제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상업광고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의 용인 영역을 매우 좁게 보고 오히려 개인의 명예를 강조하는 이익형량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라1020 결정
〈돌발영상 불만 엿듣기 사건〉

요 건	사 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해당사항 없음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당시 관심의 대상인 국회의원들의 비인기 상임위원회 기피 현상을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공익성은 소명됨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익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임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신청인이 본회의장 좌석에 앉아서 타인과 대화하는 부분을 삭제해야함

이 사안은 신청인이 2006. 6. 2. 열린 제260회 임시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자신의 의원석에 앉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자신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을 포함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의 촬영

영 기자가 신청인의 위와 같은 대화 모습을 발견하고, 약 7분 동안 신청인의 대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피신청인 방송국의 인터넷 사이트 ‘돌발영상’에서 ‘불만 엿듣기’로 게재하자 이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방송국이 자신을 마치 법사위 배정을 기피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묘사하고, 신청인을 마치 소신 없고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로 보이게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우리 법원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²⁶⁾’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이 사건 동영상에는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위 보도 당시 관심의 대상인 국회의원들의 비인기 상임위원회 기피 현상을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공익성이 소멸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 중 대화 부분은 신청인과 동료의원들과의 사적 대화를 피신청인 소속 기자가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는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이 결정은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위법행위일 때에도 해당 표현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사전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인격권 침해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 법 위반 사항까지 검토할 것을 시사하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7카합1302 결정 〈추적 60분 보복폭행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²⁶⁾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표현내용에는 사실관계 다름이 있음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언론의 자유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송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됨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 충분히 예상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방송의 금지를 명함으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신청의 목적은 일응 달성됨

이 사안은 재벌총수의 폭행 혐의 사건에 관하여 ‘보복폭행 의혹사건,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라는 부제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재벌총수인 신청인에 대한 관대한 사법처리가 이번 사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국가 사법체계를 무시한 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추적 60분’ 프로그램에 대하여 당사자인 재벌총수가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내용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기관의 방송의 자유는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 시켜 민주적 질서를 생성·유지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피신청인이 방송국이 위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신청인이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고, 신청인은 폭행의 범 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그 명예가 훼손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보면서,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될 경우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카합2184 결정 〈내열 강화유리 용기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 제조 제품이 사용되어 실험이 이루어졌음이 소명되지 않음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내열유리강화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실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인되지 않음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을 때 신청인은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용이 한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됨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이 사용되어 실험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는 이상, 신청인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중지시킴이 상당함

이 사안은 내열 강화유리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의 제품에 관하여, 피신청인인 방송국이 내열 강화유리를 사용한 용기가 상온에서 폭발할 수 있고, 충격을 받아 깨질 경우 파편이 높게 비산하는 성질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을 ‘C 프로그램’라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하려 하자 신청인이 방송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위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었을 때 신청인은 그동안 쌓아

은 명예와 신용이 한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되고,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의 매출에도 커다란 지장을 받을 것임은 물론, 다수의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에서 심각한 타격과 혼란이 야기될 것임이 넉넉히 예견된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서는 실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이 사용되어 실험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게 소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9. 대구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2카합161 결정
〈개인택시조합 서적인쇄·배포금지 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허위 사실 적시 부분 인정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소명 부족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서적이 계속하여 배포되는 경우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므로 침해행위의 중지나 예방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 인정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기사 삭제·말소 인정, 간접강제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합원인바, 피신청인은 “도둑질이 춤추는 개인택시조합!”이라는 서적을 제작하여 조합원 등에게 배포하여 피신청인이 서적인쇄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의 일부는 글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카합1661 결정 <‘일베’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 삭제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닌 비방글임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님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신청인이 입는 명예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함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불법성은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임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 1회당 그 위반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 원씩의 간접강제 결정

피신청인은 www.ilbe.com (이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신청인을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발, 똥꼬충, 호모세끼’ 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 비속어, 모멸적 표현, 협박성 단어 등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게시물 또는 댓글이 계속적으로 게시되어 있어, 신청인은 인격권을 근거로 위와 같은 게시물 또는 댓글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되어 왔고, 이 사건 결정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문언이나 구체적 표현, 그 게시 기간, 게시 목적 또는 동기, 게시의 반복성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는 명예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므로,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불법성은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르고 판단된다고 보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비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

IV.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기각 결정문 분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²⁷⁾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일부 대사나 배경화면이 그 시대 및 관련 인물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고, 아무리 합리적인 관객이라도 위 장면들에서 묘사된 각하의 모습을 실제 고인의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음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됨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고인에 대한 인격적 침해는 인정되나,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음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이 사건 영화로 인해 원고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형해화되어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침해된 추모의 정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

27)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상영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106 결정), 그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이 사건 영화 중 위 일부 장면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본안판결이나, 가처분결정에 관한 내용이 판시되어 있어 함께 살핀다.

	저한 침해를 당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한 바, 고인의 유족인 원고도 공인성과 역사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건 영화가 다른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 등을 더해보면 원고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된 정도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원고가 청구한 영화상영금지청구는 영화상영 등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님. 다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위자의무는 인정되어 위자료 인정

이 사안은 고인인 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특정 장면을 통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고인의 아들인 신청인이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위 영화 중 극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상영금지 된 장면을 삭제하고 이를 무지 화면으로 처리하여 위 영화를 개봉하고, 위 상영금지 된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해외영화제 초청이나 디브이디 판매를 통해 외국에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 텔레비전을 통해 상영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자, 고인의 아들인 신청인(원고)이 본안 소송을 통하여 위 영화를 극장에서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디브이디, 비디오테이프, 시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 상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를 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 기준이 되는 ‘명백·현존하는 위협의 원칙’²⁸⁾에 입각하여, 영화의 제작·상영의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원은 ‘중대, 명백’의 표현을 사용한다. 즉, 영화는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어

28) 임지봉 (2006). 명백·현존하는 위협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34권 4-2호, 168.

서, 영화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격적 법익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므로, 먼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고,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 인물에 대한 탐구와 평가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자(死者)의 정치적, 사회적 행적과 그와 관련된 생활상 등을 표현한 경우에는 사자(死者)의 인격적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그 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영화상영 등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영화상영 등의 금지는 영화로 인한 인격적 법익의 침해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영화가 특정장면을 통해 고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고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나, 고인의 역사적 특수성, 위 영화가 다른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위 영화로 인한 고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아 상영금지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 판결은 영화와 같은 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중대, 명백’한 피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영화상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판결이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카합3242 결정 〈백혈병 진료비 과다청구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제보를 받고 나서 해당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비 환급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담당 직원들의 인터뷰를 거쳐 그 제보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여 보도내용을 작성하여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의료법인과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치료내용과 그 비용 및 이러한 환자들의 의료비용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은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임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처분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금지를 명할 만큼 필요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방송의 자유는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충분한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만 의료법인인 신청인들의 반론내용을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야함

이 사안은 방송 예정 프로그램 중 ‘백혈병 고액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받았나?’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 관하여 의료법인인 신청인이 위 프로그램이 편파적이고,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의사들에 대한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위 프로그램의 보도내용 작성 방식을 살펴면서, 위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백혈병 환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위 사실에 관하여 해당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비 환급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인터뷰를 거쳐 제보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여 보도내용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편파적인 의도라기보다는 보험급여기준상의 문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속하고, 언론기관의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민주적 질서를 생성·유지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위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명할 만큼 필요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방송금지의 경우, 우리 법원은 보도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였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결정은 신청인이 위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명할 만큼 필요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다만 피신청인이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표현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의사들과 환자들 사이의 불신을 야기하고,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의 노력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하여, 의료법인인 신청인의 반론 내용을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카합1003 결정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일제강점기 당시 검사로 재직한 사실이 소명됨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지도층 인사인 위 검사의 일제강점기의 경력이나 친일 여부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도 부족함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표현행위가 예외적으로 사전금지 허용할 정도는 아님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나, 그와 같은 소명 부족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예외적으로 사전금지 허용할 정도는 아니며 이에 대한 입증 부족
--------------------	------------------------------------

이 사안은 일제 강점하에 검사로 재직한 자의 후손이 친일인명사전편찬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을 상대로, 위 사단법인이 일제강점기에 검사로 재직한 자를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게재금지가 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우선 일제 강점하에 검사로 재직한 자의 후손인 채무자의 청구는 친일인명사전에 게재되는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 그 금지를 구하고 있다고 정리하면서,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것은 위 검사가 친일인사라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라고 보았다. 즉,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목적이 공익적인 경우에는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기에,²⁹⁾ ‘친일’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위 검사의 경력이나 친일 여부는 공공적 의미의 사안이므로, 예외적으로 사전금지를 허용할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결정은 ‘친일’이라는 단어를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보아, 그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의견 또는 논평 자체에 대한 진실성 유무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금지가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위 결정에서는 단순히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와 친일인명사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게재되는지를 나누어 판단하면서, 단순히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것은 친일이라는 표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친일이라는 단어의 개

²⁹⁾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전금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카합823 결정 〈친일인명사전 게시금지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실제로 A가 충후미술전에 출품하려 하고 결전미술전에 입선함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지도층 인사인 A의 일제강점기 경력이나 친일여부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는 소명도 부족함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표현행위가 예외적으로 사전금지 허용할 정도는 아님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나, 그와 같은 소명 부족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예외적으로 사전금지 허용할 정도는 아니며, 이에 대한 입증 부족

이 사안은 일제강점기하에 ‘충후미술전·결전미술전’에 입선한 자인 A의 후손이 친일인명사전편찬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을 상대로, 위 사단법인이 ‘충후미술전·결전미술전에 지속적으로 출품하거나 입선한 자’를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발행 및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우리 법원은 위 3번 사안과 동일하게, A의 후손은 친일인명사전에 게재될 A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금지를 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게재 사실’과 ‘게재된 내

용’을 구분하였다. A의 후손이 친일인명사전에 게재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면, A가 ‘친일’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한 판단만이 문제 되는데, 우리 법원은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는 A가 친일인사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이고, 실제로 A가 총후미술전에 출품하려고 하고 결전미술전에 입선한 사실이 소명되고, 친일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위 A의 친일 여부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도 부족하기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해당 표현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 의견이라면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1카합297 결정 〈‘트루맛쇼’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특정 음식점이 실제로 맛집이거나 스타의 단골 맛집인지 등과 관계없이 홍보대행사 등에게 일정한 돈을 주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인 일관된 주제로 삼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표현내용은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공중과 프로그램에 공개적으로 소개될 정도의 맛집이 아님에도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하여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등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인정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할 수 없음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방송사에 음식점이 맛집 소개 프로그램 출연을 위하여 홍보대행사 등에 제공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일부 모호한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만으로는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충분히 소명되지 않음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트루맛쇼 자체에 대한 상영 등의 금지 내지 그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수정 등을 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하는 경우, 신청인으로서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피신청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 창작물의 본래 모습을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일 기회 자체를 봉쇄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보전권리 등에 관하여 통상적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소명 부족함

이 사안은 영상물 제작사와 그 대표자인 영화감독이 공중과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 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그 촬영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부분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표현 내용이 일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영상 부분 등 TV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돈을 받고 음식점을 출연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은 맛있는 TV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경쟁적으로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공중과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소개할 정도의 맛집이 아님에도 흥

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하여 방송에 소개될 수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전에 섭외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음식 맛에 대하여 과장된 인터뷰를 하는 장면 등 미리 준비된 대본에 따라 연출된 내용들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고 있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되기에 이 사건 영상 방영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표현내용에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가깝고, 공공의 이익 및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이를 반증할만한 입증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결정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언론사와 언론사 사이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표현을 하는 경우,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상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언론사와 언론사 사이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4. 선고 2013카합339 결정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우리사회에 여전히 천안함 사건의 사고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의혹 제기 자체를 금기시하고 막기보다는 의혹제기를 허용하고 그에 대하여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것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이 사건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영화가 채권자들 개인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영화의 상영 자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 사안은 2010. 3. 26.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직무 수행 중 침몰한 사건인 천안함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천안함 프로젝트’에 관하여, 당시 천안함의 함장, 작전처장, 해군 구조팀장, 순직한 하사의 부모가 위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들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위 영화는 이러한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피격된 것이 아니라 좌초되었거나 다른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하였고, 해군이 구조를 지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천안함 사건의 의혹은 이미 영화보다 전파력이 강한 KBS 추적 60분에서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영화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천안함 사건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를 허용하고 그에 대하여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보면 이 사건 영화의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영화 상영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급하게 영화의 상영 자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전금지청구권이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4카합80285 결정 <영화 ‘청솔학원’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긴 하였으나, 오인가능성이 적음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판단하지 않음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영화 ‘청솔학원’에 등장하는 학원 건물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고 채권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청솔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어, 그 시설과 규모에 비추어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예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위 두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하며, 청솔학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영화 관람객들이 영화 속 청솔학원을 채권자가 운영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오인가능성이 없으므로 기각

이 사건 사안은 청솔학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영화 ‘청솔학원’ 제작자를 상대로 하여, 영화 ‘청솔학원’에서 청솔학원을 가출한 소녀들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시키는 미성년자 성매매업소로, 청솔학원 원장을 미성년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표현하고 있어, 위 영화를 상영하

는 행위는 채권자의 등록서비스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 위 영화의 상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한 사안이다.

우리 법원은 위 영화에 나오는 ‘청솔학원’의 명칭의 학원 건물이 미성년자 성매매업소로 표현되는 장면 및 이를 위장 성매매업소로 지칭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위 장면을 관람한 사람들이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될 여지가 있어, ‘청솔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채권자의 명예에 상당한 손상이 있을 개연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영화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저작한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서 실화가 아닌 창작된 허구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영화 엔딩 크레딧에는 위 소설이 원작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2회 표시되며, 영화 속 청솔학원이 실제 학원이 아니라 도박박 대신 인수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대사가 있고, 영화 속 청솔학원은 강릉시에 소재하나 채권자가 운영하는 청솔학원은 수도권에 있고, 학원의 명칭이 ‘청솔학원’이거나 ‘청솔’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은 전국 각지에 다수 존재하므로, 영화 속 청솔학원이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운영하는 청솔학원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객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결정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예술의 자유 사이의 비교형량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바, 우리 법원은 하나의 창작물인 영화에 등장하는 소재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특정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등이 실제 인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위 판결은 공공의 이익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는바, 이

는 영화가 실제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원작에 기반한 극영화이기에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카합778 결정
〈부당하고 명예훼손등 금지 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피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하고 및 그 기초가 된 무단이탈 사실을 다두고 있어, 피신청인 주장내용이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함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피신청인이 B 레저산업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특정한 사회집단인 B레저산업 및 B그룹 임직원들의 관심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음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표현 내용이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판정만을 들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사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속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신청인들의 인격권(명예권)과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신청인들의 인격권(명예권)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음

이 사건은 B건설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건설 영업 업무를 담당한 피신청인이 B레저산업으로 전직하여 부동산 개발 애널리스트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징계해고를 당하고, B그룹 임직원들에게 ‘부당해고로 하루 만에 잘린 구성원의 절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B그룹 임직원들에게 ‘비상경영체제의 B임직원께.. <http://goo.gl/>’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 문자에 포함된 웹페이지를 누르면 신청인들을 비롯한 B그

룹이 경영상 긴박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자신을 사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B그룹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신청인이 작성한 글이 게시된 블로그 화면이 나타나자, 신청인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한 것이다.

이 결정에서는 신청인들의 인격권과 피신청인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바, 피신청인의 표현행위는 ‘평가’나 ‘의견표명’에 더 중점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평가 내지 의견표명적 표현행위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본질적 내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신청인이 적시한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 피신청인의 표현은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가깝기에, 의견 혹은 논평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7카합81063 결정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표현은 의견에 가까우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촬영 영상은 갑 방송사의 임원들의 공적행사나 외부 강연, 출판기념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 및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대부분임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갑 방송사의 임원들은 공적인물이고, 임원들의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임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함
④ 표현가치와 명예에 이익형량	영화의 표현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공적인물들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임. 또한 표현의 대상이 언론사 소속 언론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언론인이 주요

	임원 직책을 맡고 있다면, 언론사에 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갑 방송사의 임원들은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대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

이 사안은 갑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을과 인터넷신문 사업자인 병이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갑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정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갑 방송사와 정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정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갑 방송사와 정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이다.

이 결정에서 명예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갑 방송사의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 ‘낙하산 인사’, ‘권력의 대리인’과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도 가치 평가적인 개념으로 의견표현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갑 방송사의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수백 명의 사원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보면, 갑 방송사 임원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갑 방송사 임원들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결정은 갑 방송사 전·현직 임원들이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첫 번째로 언론의 보도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살핀다. 특히 상대가 언론사인 경우, 언론사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고 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³⁰⁾

특히, 이 사안에서는 표현의 대상이 언론사 소속 언론인인 경우 원칙

적으로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해당 언론인이 언론사의 대표자나 주요 임원 직책을 맡고 있어 언론사의 인사, 경영 방향, 정책 판단을 결정할 수 있고 언론사의 특정 쟁점에 대한 보도 여부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언론인은 자신들에 대한 표현에 대하여도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언론사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와 같은 언론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한 표현의 당부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판시하여,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및 이에 대한 비교형량의 기준을 제공하였다.

10. 대법원 2019. 3. 6. 선고 2018마6721 결정

<영화 'JSA'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요건	사안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영화 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성이나 관객들의 감동 등을 고양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각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함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위 영화가 망인의 사망 사건을 비롯한 각종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앞으로 망인의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채권자의 노력에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설령 이 사건 시나리오가 망인이나 채권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화 자체의 제작을 금지할 정도로 그 핵심적 내용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영화 제작자가 상영되는 자막에 각색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일반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용이하게 인식하도록 하거나 영화 홍보 과정

30)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에서도 이 사건 영화의 내용을 망인의 사망 사건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망인이나 채권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음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안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甲 중위의 아버지 乙이 甲 중위 사망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丙 주식회사와 위 영화의 시나리오 작성과 연출을 맡고 있는 작가 겸 영화감독 丁을 상대로 영화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로 甲 중위와 乙의 명예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영화의 제작·상영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영화 ‘청솔학원’ 사건처럼 완전한 극영화가 아니더라도 상업영화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각색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우리 법원은 영화 ‘JSA’에서 甲 중위로 특정되는 인물이 乙의 주장과 달리 군 내부 부조리와 연관되어 사망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묘사가 상업 영화의 예술·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등 甲 중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후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즉, 영화의 묘사가 구체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

렵고, 상업 영화의 특성상 일부 허구는 용인되며,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공익성도 있다는 점에서, 甲과 乙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 하였을 때 영화의 표현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V.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 판단기준

1.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검토 순서

판례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를 검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표현내용이 구체적 사실적시인지 의견인지 판단한다. ‘친일 인명사건 게재금지가처분 사건’, ‘부당해고 명예훼손 등 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게재행위가 의견이나 논평인지 여부를 살펴, 의견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다.

표현행위가 의견이나 논평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사실적시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를 살핀다. 영화 ‘JSA’ 상영 금지가처분 사건이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에서 실시한 것처럼, 극 영화나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의 경우에는 상업 영화의 특성상 그 예술의 자유의 내용은 어느 정도의 각색을 용인하면서 표현의 범위를 보다 넓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판례는 의견인지 사실인지 여부, 구체적 사실이라면 사실적시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실제 사실에 해당하면, 해당 표현의 대상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 공적 사안과 관련되어 표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트루맛쇼’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및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

사에 대한 표현이나 언론사 임직원에 대한 표현의 범위 또한 한 개인에 대한 표현보다는 보다 넓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현행위를 하는 것이 한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하는지 비교형량하는 과정을 거친다. 표현내용인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허위사실이거나 의견이나 논평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신청인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이후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살핀다. 즉,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 보는데, 예술의 자유에 관하여는 표현하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명백·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존재하는지까지도 함께 검토하고(영화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사전금지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도 함께 살핀다. 그리고 사전금지를 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명예의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협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금지가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라고 보아 신청인의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한다(추적 60분 보복폭행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내열 강화유리 용기 사건).

이처럼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보전권리에서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닐 것,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닐 것, ③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않을 것을 살피고, 보전의 필요성에서 ④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것, ⑤ 사전금지가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일 것을 판단한다.

2. 판례의 판단 기준 경향

<표 1>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인용 결정 사건 분류

요건	사건명	인용 사유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이휘소 박사 출판등금지가처분 사건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닌 경우)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님
	우유비방광고중지 사건	광고내용이 진실이 아님
	특정 종교를 사이버로 기술하여 출판한 사건	허위내용임을 자인하고 있음
	김대중 X파일 사건	표현 내용은 진실이 아님
	영화 '실미도'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표현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됨
	추적 60분 보복폭행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표현내용에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음
	내열강화유리 용기 사건	사실이라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개인택시조합 서적인쇄·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	허위사실이 적시됨
	'일베'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 삭제 사건	표현내용은 진실이 아닌 비방임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특정 종교를 사이버로 기술하여 출판한 사건	사생활 내용은 공공의 관심사 아님
	김대중 X파일 사건	신청인에 대한 비방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아님
	추적 60분 보복폭행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로 언론의 자유 보호 대상 아님
	'일베'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 삭제 사건	공공의 이익 아님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휘소 박사 출판등금지가처분 사건 (초상권 침해 부분)	공인이 아닌 공인의 유족들의 초상권은 침해됨
	돌발영상 불만엿듣기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임
	내열강화유리 용기 사건	방송될 경우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됨
	개인택시조합 서적인쇄·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	서적이 계속하여 배포되는 경우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됨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일베'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 삭제 사건	현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침해
	영화 '실미도'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상업적광고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 아님

요건	사건명	인용 사유
	돌발영상 불만엿듣기 사건	신청인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내열강화유리 용기 사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명예훼손 정도 심각함
	‘일베’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 삭제 사건	신청인에 대한 비방의 불법성은 현존·명백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영화 ‘실미도’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공식홈페이지 운영, 비디오세트 등이 제작·판매되고 있어 시급한 가처분 필요함
	내열강화유리 용기 사건	방송중지가 요청됨
	‘일베’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 삭제 사건	간접강제 결정

위 <표 1>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인용 결정문 10건 중 9건이 모두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의 요건을 중심으로 사전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판례는 사전금지청구의 인용 요건으로 표현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엇보다 해당 표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입증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해당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사적인 내용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한 개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한 개인의 인격권을 더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표현이 지속되어 한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표현행위가 불법성에 기초한 경우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용한다. 이처럼 우리 판례는 사전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때,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면서도, 해당 표현의 목적,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은 무엇보다 표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중심으로 입증하고, 그러한 표현

이 나온 목적이 개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로 인한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각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야 할 것이다.

〈표 2〉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기각 결정 사건 분류

요건	사건명	기각 사유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	백혈병 진료비 과다청구 방송금지처분 사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처분 사건	표현내용이 진실, ‘친일’은 의견에 해당함
	‘트루맛쇼’ 상영금지처분 사건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상영금지처분 사건	천안함 사고의 사고원인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영화 ‘청솔학원’ 상영금지처분 사건	청솔학원이라는 명칭 사용되었으나 오인가능성이 적음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표현은 의견에 가깝고,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음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 아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처분 사건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됨
	백혈병 진료비 과다청구 방송금지처분 사건	공공이 이익에 관한 사항임
	‘트루맛쇼’ 상영금지처분 사건	공익적 목적 인정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상영금지처분 사건	투명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의도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공적인물, 공적인 관심사
영화 ‘JSA’ 상영금지처분 사건	군외문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 제고	
③ 피해자에게 중대·현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처분 사건	영화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명백하지는 않음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처분 사건	예외적으로 사전금지 허용할 정도는 아님
	‘트루맛쇼’ 상영금지처분 사건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할 수 없음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상영금지처분 사건	중대·명백한 훼손 아님
	영화 ‘JSA’ 상영금지처분 사건	영화 제작을 금지할 정도는 아님

요건	사건명	기각 사유
④ 표현가치와 명예 이익형량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처분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침해정도가 상영금지 정도까지는 아님
	영화 ‘청솔학원’ 상영금지처분 사건	예술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형량을 해보면, 영화관람객들의 오인가능성이 적음
	언론사 소속 언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언론사 소속 언론인은 언론사에 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됨
⑤ 유효적절한 구제수단 여부	‘트루맛쇼’ 상영금지처분 사건	만족적 가치분의 경우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소명 부족함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상영금지처분 사건	기습하게 영화의 상영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영화 ‘JSA’ 상영금지처분 사건	소명되지 않음.

위 <표 2>를 살펴보면, 표현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표현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살피고, 해당 표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는지 또한 해당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현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모습을 보여준다. 위 <표 1>에서는 표현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면, <표 2>는 허위사실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여부 뿐만 아니라 공익성, 피해자에 대한 손해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과정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이익형량 하는 모습으로 귀결되기에, 이는 명예훼손의 사전금지청구의 상대방은 위와 같이 당시 표현의 목적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크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Ⅵ. 결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사전금지가 유일한 경우에는 사전금지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사전금지청구가 인정되는 만큼,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실체적인 요건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의 정리가 필요하다.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는 대부분 가처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는 통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임에도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본안판단이 이루어지는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반 가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이 표현에 대한 사전금지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일응 타당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바, 특히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 즉, 표현행위가 구체적인 사실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그리고 표현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감정에 우월 하는지 여부를 비교 형량한다.

보전의 필요성에서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바, 우리 판례는 공인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 만일 피해자가 언론사이거나 언론사 임직원인 경우에는 자신들의 반론을 매체를 통하여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음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나아가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할 만큼 사전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소명의 정도,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사이의 비교형량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의 태도를 보면, 실제 결정문들은 실질적으로는 본안판결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고 있어 가처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즉,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형량의 문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안판단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판례는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소명의 정도를 높게 보고 있어 엄격하게 보는 태도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각 판결의 이유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빠지지 않기에,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신청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요건들에 대한 빠짐없는 소명이 요청된다.

■ 참고 문헌

1. 논문

- 권태상 (2020).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9권 2호, 233-263.
- 김재형 (2004).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339호, 68-94.
- 심미선 (2020).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6권 2호, 1-41.
- 심승우·이혜민 (2013). 보전처분의 남용 및 해결방안. <민사집행법연구>, 9호, 226-300.
- 유아람 (2011). 간접강제의 법리와 실무상 문제. <민사집행법연구>, 7호, 200-237.
- 임지봉 (2006). 명백·현존하는 위협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34권 4-2호, 167-194.
- 장두영 (2016).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실무적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12호, 396-446.
- 전광백 (2012).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홍익법학>, 13권 3호, 123-167.
- 정선주 (2009). 가처분절차에서 소명. <민사소송>, 13권 2호, 240-276.

2. 판례

-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마424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대법원 2019. 3. 6. 선고 2018마6721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0. 10. 선고 97카합29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선고 2004라4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선고 2004라4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라102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카합324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7카합13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카합218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카합10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1카합29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2카합1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카합166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4. 선고 2013카합3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4카합802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카합7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7카합81063 판결

3. 온라인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ABSTRACT

**Study on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Lee, Joo Hee
Lawyer, Lee Joo Hee Law Office

Victim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through media reports will exercise prior and post remedies if necessary.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Because a prior prohibition on publication is banned in principle, research on prior remedies is less active than research on post remedies.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inflicting severe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 an exceptionally prior prohibition should be allowed. Furthermore, reorganization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the right to request such prohibitory injunction is needed.

After examining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right to claim prior prohibition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se issues, we will organize the decisions on which pre-prohibitory conjunction are recognized and which are dismissed in defamation cases based on the factual relationship. We will then establish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ase in which such are allowed.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clear guidelines for the people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advance(II) and how the above requirements were applied to the factual relationship in the citation decision(III) and dismissal decision(IV). Then, th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a claim for a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the precedent will be established(V).

Keywords: defamation, pre-prohibition injunction, prior remedies, freedom of expression, judgment criteria

[논문투고일 2021. 6. 21. 논문수정일 2021. 7. 16. 게재확정일 2021. 7. 27.]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피해 구제에 관한 고찰

백 경 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국문초록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감염병 관련 정보들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대응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누출하기도 하였고, 그 정보는 미디어를 통하여 2차적으로 가공되어 확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감염병과 무관한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그 공표된 개인 정보를 가공 혹은 확장시킴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부분은 미디어의 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해당 감염병 환자에게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미디어의 공표가 명예훼손에 이르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어떠한 피해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감염병 위기, 정보공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잊힐 권리

* khbaek@inha.ac.kr

목 차

- I. 서론
- II. 감염병 위기와 정보 공개
 - 1. 감염병 위기와 위기 경보의 단계
 - 2.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
 - 3. 역학조사와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와의 관계
 - 4. 확진 환자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의 내용
- III.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피해 구제
 - 1.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와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 2.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의 구제수단
- IV. 미디어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와 민사상 피해 구제
 - 1.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
 - 2.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수단
- V.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미디어의 보도 실례와 감염병 환자의 피해 구제
 - 1.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미디어의 보도 실례
 - 2.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와 그 피해 구제
- VI. 결론

I. 서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작금의 사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 법’이라 한다)상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 위기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위기의 단계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단계인 심각단계가 1년을 넘어가고 있고 2021년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종래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의 예로 2009년의 신종 인플루엔자 A(Novel Swine-Origin Influenza [H1N1], 신종 플루) 사태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위기가 1년 이상 장기화되지는 않았고, 그렇기에 대

규모의 역학조사와 그 결과 이루어지는 감염병 위기와 관련된 개인 정보의 공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메르스) 사태에서 ○○병원의 의사였던 35번 환자의 증상 발현 시기, 접촉자 현황과 이동 경로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서울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하였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되는 사태가 발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을 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하면서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감염병 위기 시 공표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규율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 시 개인 정보의 공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감염병 관련 정보들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고, 그중에는 감염병 환자의 개인 정보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명문의 신설 규정을 통하여 감염병 위기 시 개인 정보 공개의 범위를 입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대응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피공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 정보까지 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정보 중 일부는 해당 감염병 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내용까지 밝혀지기도 하였으며 지극히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였는바, 이러한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삭제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절차가 「감염병예방법」상 부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하여 그 정보가 미디어를 통하여 2차적으로 가공되어 확산되었고, 일부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하여 「감염

1) 전자신문 (2015. 6. 15).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에 불만 표출,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주는 바람에 면역력 약해졌다. URL: <https://www.etnews.com/20150615000134>

병예방법」을 위반한 자가 됨으로써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종래 감염병 위기 시 공개될 필요가 없는 정보가 삭제되지 못한 채 누적적으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위기 시 개인 정보 공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감염병예방법」 등 하위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개인 정보의 공개 범위가 축소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이 마련되었으며, 법상 공개가 가능한 개인정보도 일정 기간 공개한 후 삭제하는 지침이 정비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미디어를 통하여 공개되었던 감염병 위기와 무관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도 불필요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들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디어를 통하여 공표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감염병 환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 정보들에 관하여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그 연장선상에서 미디어의 공표가 명예훼손에 이르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미디어에 대하여 법적 구제를 강구할 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감염병 위기와 정보 공개

1. 감염병 위기와 위기 경보의 단계

「재난안전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재난이라고 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 경우 사회 재난으로 분류한다(제3조 제1호 나목). 「재난안전 법」상 위기경보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의 징후를 식별하거나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로써 발령하는 것이다. 위기경보의 단계는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은 위기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이고, 주의는 위기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이며, 경계는 위기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한 위기 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4; 이옥철, 2015).

한편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의 단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정부 기관의 주요 대응활동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 양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염병 위기 경보의 단계가 상이할 수 있다.²⁾

2.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

종래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국민이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여 왔고(동법 제6조 제2항),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의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감염병예방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명문 규정으로 신설하게 되었다.³⁾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2) 감염병 위기의 경보 단계에 의거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대응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URL: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20300>(2021. 7. 20. 최종 방문)

3) 당시 개정 이유로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공개의무의 발동 시기, 공개의무 주체의 변경과 확대, 이의신청 제도와 삭제 제도의 신설, 공개 제외 정보의 분리, 공개정보의 추가 등에 관하여 논의를 통하여 개정 작업을 거쳐 왔다.⁴⁾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용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 참조.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762&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2021. 7. 20. 최종 방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762&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2021. 7. 20. 최종 방문))

4) 이를 도표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에 대한 개정 연혁

개정 연혁	조문 내용	비고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①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개의무 발동 시기를 감염병위기 경보단계 중 주의 이상의 경보에 해당할 때로 구체화함.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개방법의 구체화 및 공개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이동하여 신설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 공개하여야 한다. ② …… 질병관리청장에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주체 및 이의신청 상대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정보공개 주체 및 이의신청 상대방을 질병관리청장에 더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그리하여 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일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를 기준으로 할 때, 제1항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공개 시기는 감염병 위기가 주의 이상일 경우이고, 공개 정보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이며, 공개 제외 정보는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각각 규율을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제외 정보로는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가 있고(「감염병예방법

	<p>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p> <p>③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 정보공개 및 삭제와 ……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으로 확장함.</p> <p>-공개 제외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명시하는 방식을 도입함.</p> <p>-공개 필요가 없어진 때에 공개된 정보의 삭제 제도를 도입함.</p>
<p>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p>	<p>① ……,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p>	<p>-정보공개 대상을 추가함.</p>

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정보공개의 범위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1항).

3. 역학조사와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와의 관계

가. 감염병 위기와 역학조사

‘역학(疫學)’은 인간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자연사를 기술하여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질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관한 감시·관리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인바(이성은, 1996), 이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영역에서는 현지조사와 지역사회로부터의 검체 채취·분석 작업을 통해 감염병의 기원과 감염자를 확인하고, 감염자의 증상의 발현 시점과 이동 동선 등을 알아내는 역할을 한다.⁵⁾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 또한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동법 제2조 제17호), 전자의 역학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⁶⁾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동법 제18조 제1항).⁷⁾

5) URL: <https://www.cdc.gov/publichealth101/epidemiology.html>(2021. 7. 20. 최종 방문)

6) 우리나라의 역학조사 기관의 이원화가 감염병 위기 시 신속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조기 인지, 통일적 계획을 수립하는 일원화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윤진아 (2018).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 정책연구>, 18집 4호, 281.

나. 역학조사 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와 감염병 위기 시 공개가 필요한 정보와의 관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감염병에 관련된 역학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감염병 환자 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 경로,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를 감염병 위기 시 공개가 필요한 정보와 비교하여 열거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은 바, 역학조사 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감염병 위기 시 공개정보의 범위보다 더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학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역학조사 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감염병 위기 시 국민에게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선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2> 역학조사 시 수집되는 정보와 감염병 위기 시 공개가 필요한 정보의 각 범위

역학조사 시 수집되는 정보	감염병 위기 시 공개 필요 정보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감염병 환자 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 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진료기록 -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시·구 단위 이상의 거주지 주소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7) 「감염병예방법」에서도 역학조사 방법을 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② 인체 검체 채취 및 시험, ③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④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⑤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3.); 박미정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에 대한 비례 원칙의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 14권 2호, 4-5.

4. 확진 환자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의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0. 10. 7.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발표하여 각 지자체에 하달하고 그 준수를 요청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2020).

구체적으로 i) 공개 대상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자인 ‘감염병 환자’로 한정하였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 ii) 공개 시점은 감염병 위기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로 발령될 때로 하며, 공개 기간은 정보 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이며, 해당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iii) 공개 범위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는 성별, 연령, 국적,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되, 직장명의 경우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iv) 시간적 범주는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며, 만약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v) 장소·이동 수단의 경우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2020).

Ⅲ.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피해 구제

1.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와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과의 관계

가.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알 권리(right to know)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할 수 있는 자유권이면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⁸⁾ 이때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으로,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 매체, 전시회, 박물관, 공적 행사 등이 해당한다(정종섭, 2016).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감염병예방법」상의 규정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에서 비롯된다(동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국민은 동 조항을 통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알 권리의 측면에서 미디어와 같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을 통하여서도 자유롭게 수집, 선택,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나.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공존하며 교차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정보를 알 권리를 지니는 한편 자신의 정보에 관하여 결정하고 관리·통제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정종섭, 2016; 성낙인, 2018). 전자는 일

8) 현재 1991. 5. 31. 선고 90헌마 133 결정.

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할 수 있는 자유권이면서 동시에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정종섭, 2016). 후자는 자기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으로 명명되며(정종섭, 2016),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정종섭, 2016; 백경희, 2017). 사법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의 범주 내로 분류하고 있다.⁹⁾ 이에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이용과 처리에 있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정보 자기결정의 원리),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목적 구속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범위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원칙과 최소 수집의 원칙),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수집·처리·이용 권한과 관할이 분리되어야 하며(정보의 권력 분립 원칙),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 및 정보처리 과정 등 정보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투명성의 원칙)(장주봉, 2012). 또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종류의 기록 금지, 개인정보 수집 방법의 제한, 정보주체 의사에 어긋나는 개인정보 입력의 금지, 개인정보의 무제한 축적 금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액세스권 보장, 개인정보에 관한 정정권 보장 등이 요청된다(성낙인, 2018).

이러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구체화되어 있다. 즉,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을 때 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고(제15조 제1항 제1호),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소정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지원립 (2021). <민법판례>. 서울: 박영사.

(제15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이라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목적으로 감염병 환자에 관한 일정 범위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¹⁰⁾ 감염병 환자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그 공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감염병 환자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본인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기에, 감염병 환자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저촉 가능성 측면에서 양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감염병예방법」이 지니는 목적인 감염병 예방과 감염 차단을 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재난인 감염병 위기의 경보단계 주의 이상에 해당하여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높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의 일정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¹¹⁾ 둘째,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감염병 환자의 성별, 나이는 감염 전파의 차단이나 예방과는 무관하고, 직업의 경우 해당 직군이 마치 감염병을 전파의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은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오고 성별, 나이, 이동 경로와 결합할 경우 해당 감염병 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그 공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필요하고 그 공개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정지영·표시영, 2021). 셋째, 감염병 환자의 이동 수단과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의 경우,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숨은 감염병 환자등을 조기에 격리

10) 송가영 (2020).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통권 10호, 10-11.

11) 백경희·김자영 (2021).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 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28집 1호, 15; 정지영·표시영 (2021).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211.

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염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감염병 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 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공개는 감염병 환자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의 구제수단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정보가 발령되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이 공개되었으나 그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의 2 제3항, 4항). 따라서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제도에 의하여 공개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위와 같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 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34조의 2 제2항).

만약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와 관련하여 공개한 개인정보를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공

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¹²⁾

IV. 미디어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와 민사상 피해 구제

1.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한계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고전적 의미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더하여 보도의 자유·알 권리·엑세스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정립하기 위하여 적극적 자유로 변모하여 왔고,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근간이므로 합헌성 판단의 기준을 다른 자유권의 규제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우월적 지위 이론도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제가 금지되고,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명확성의 이론과 합헌성 추정의 배제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 비교형량의 원칙 또는 이중기준의 원칙이 적용된다(정중섭, 2016; 성낙인, 2018).

1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 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지니는 이와 같은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 제21조 제4항). 따라서 미디어는 정보를 수집하여 보도함에 있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가 된다(정종섭, 2016; 성낙인, 2018; 손형섭, 2008; 김봉희, 2009). 이때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더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보호법익이고,¹³⁾ ‘권리’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비롯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권 등이 대표적인바, 이들은 인격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¹⁴⁾

2.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수단

가.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인격권의 침해 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이 필요하다. 증명책임의 부담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인 미디어의 고의, 과실 등 가해행위의 위법성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또

13)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대법원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실시하였다.

14) 인격권은 사람이 생명, 신체, 자유, 건강, 명예, 사생활, 초상, 성명, 음성 대화 등에 관하여 갖는 권리를 포괄하기 위한 용어이다.; 불법행위의 유형형[인격권], 편집대표 김용담 (2016). <주석민법 채권각칙>, 제4판, 380-381면. 또한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인격권을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민법」 제764조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당한 처분으로는 기사의 정정보도 청구, 철회 청구, 기사의 삭제 청구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¹⁵⁾ 따라서 미디어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이들 조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미디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편집대표 김용담, 2016).

한편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미디어가 주체가 되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해자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미디어에 대하여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4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미디어에 대하여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16조), 미디어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처치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특히 「언론중재법」의 반론보도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민법」과 「형법」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

15)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성낙인, 2018).

나. 미디어의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기준

미디어가 지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은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 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고 하면서¹⁶⁾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⁷⁾

1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1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 37647 판결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적 관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들과 같은 시민운동 단체는 업무 수행의 도덕성과 공정성, 자원 조달의 투명성을 그 존립의 중요 기초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 있다.’라던가 ‘기업체에서 약점을 미끼로 돈을 끌어 쓴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원고들의 도덕성이나 순수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 향후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이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바 없고, 오히려 ‘고소 사태도 그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만, --- 이 말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피고들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위 발언을 감행한 것은, 피고들이 이미 원고들로부터 다른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는 「민법」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한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판단하고 있다(편집대표 김용담, 2016; 김준호, 2021). 대표적으로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형법」 제307조 제1항¹⁸⁾이나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형법」 제310조를 민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다(지원림, 2021). 즉,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¹⁹⁾ ‘상당성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에 입각해 있다고 평가된다(편집대표 김대휘·김신, 2017). 또한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여²⁰⁾ 민사상 명예훼손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익성과 진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형사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예

한 보복의 감정 또는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언의 내용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18) 최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결정.

1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 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훼손 행위를 한 가해자 측에 있고,²¹⁾²²⁾ 위법성 조각사유인 언론매체 등 미디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미디어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²³⁾

다. 잊힐 권리와 사후적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권

잊힐 권리 내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법제화되거나 개념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나,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의 원본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여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조소영, 2012; 이부하, 2017; 박아란·김현석, 2021; 최진웅, 2020).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혼합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²⁴⁾ 방송통신위원회도 잊힐 권

2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2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약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79262 판결.

24) 이부하 교수는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 공개된 정보가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관련 없이 정보주체가 자신 정보에 대해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면서 정보주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될지

리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라 명명하면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6).

미디어와 관련하여 잊힐 권리와 관련된 문제는 미디어가 보도를 하면서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할 권리가 존재하는지가 미디어의 기사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와 충돌하는 영역에서 다수 발생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시대는 대중이 방송의 송출이나 신문의 인쇄 지면을 통한 편찬과 같은 1회성의 기사 현출 방식 외에도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형식을 선호함으로써 미디어의 기사가 인터넷에 인위적으로 삭제가 되지 않는 한 영속성을 지니면서 축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잊힐 권리의 측면에서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을 「언론중재법」에 신설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에 부딪혀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지 않았는바, 현재 판례에 의하여 민사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이수중, 2016).

대법원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통하여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자기표현’과 정보주체가 자기전달을 통해 그 외부적 형상이 다른 사람의 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성찰을 위한 ‘내적 자유여지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한 기사의 삭제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잊힐 권리로서의 기사 삭제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 방해제거청구권으로서의 기사 삭제 청구에 대해서 사전적 방해예방청구권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대법원은 “침해행위의 사전 금지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²⁵⁾

25) 권태상 (2020).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 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권 2호, 242-243; 그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공개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대중들에 의한 평가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사후제한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부과하므로 절차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으나 사전제한은 절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절차의 적정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위 서울시장이 35번 환자에 대하여 증상의 발현 시기나 확진 시기를 중앙정부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오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미디어에 대하여 책임을 직접적으로 추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²⁸⁾ 하지만 위 서울시장의 35번 환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으로 국민의 관심이 35번 환자에게 집중되자 미디어는 35번 환자의 경과와 구체적인 소속기관, 성별, 진료 경과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35번 환자가 사망하였다거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오보가 속출하기도 한 바 있다.²⁹⁾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15. 6. 11. 35번 환자의 경과와 관련하여 오보를 낸 미디어에 대하여 유감의 표시를 표명하기까지 하였고,³⁰⁾ 해당 언론사들은 보도를 자체적으로 정정하는 수순을 밟기도 하였다.

나. 코로나 사태 중 인천학원 강사에 대한 민감 정보 공개 사건

코로나 사태는 2020. 1. 19.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가 최초 확진이 된 이래 감염병 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로 조정되었고,³¹⁾ 2020. 2.

[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9/15/2015091500139.html](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9/15/2015091500139.html)

- 28) 박원순 시장은 이후 여러 차례 35번 환자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였으나, 한 시민단체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메디칼 업저버 (2016. 4. 24). 35번 환자에 ‘마음의 상처’ 입혀 미안하다”. URL: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86> ; JTBC (2015. 6. 15).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의료단체, 박원순 시장 고발. URL: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27657
- 29) 미디어스 (2015. 6. 12). 뇌사-사망-위독?... 메르스 35번 환자 ‘죽이고 살린’ 언론들.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95>
-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 6. 12). 삼성서울병원 의사 뇌사 보도 사실무근. URL: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796502&call_from=naver_news
- 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1. 20).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대응. URL: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

23.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1년 이상 최고 등급의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³²⁾ 이러한 상황에서 2020. 5. 경 발생한 인천학원 강사 사건의 경우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즉, 2020. 5. 6. 용인에 거주하는 29세 남성 확진자가 이태원을 방문한 동선에 클럽이 포함되어있음을 지방자치단체가 밝혔고, 미디어는 이태원 소재 ‘케이클럽’을 방문하여 상당수 성 소수자가 접촉자 명단에 포함되어 ‘커밍아웃’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이어갔다.³³⁾ 특히 인천학원 강사에 대하여는 2020. 5. 13. 인천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후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추홀구 용현1·4동 거주 24세 남성’으로 공개하였고,³⁴⁾ 그 후 인천학원 강사의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내용³⁵⁾과 직장명,³⁶⁾ 소속 대학, 그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 이를 조합할 경우 특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³⁷⁾ 그러자 이태원 클럽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천학원 강사를 비롯한 접촉자들이 ‘성 정체성’이라는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로 인하여 검사를 기피하자 정부는 익명검사와 검사비 지원이라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³⁸⁾ 이후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에

NT_SEQ=352435

- 32) 의료&복지 뉴스 (2020. 2. 24).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URL: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9>
- 33) 머니투데이 (2020. 5. 7). 생활방역 전환되자 재시작된 지역감염…클럽 음성화 우려.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709002251223>
- 34) 인천in (2020. 5. 13). 미추홀구 학원서 8명 집단 감염 -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 강사가 전파. URL: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02>
- 35) 한국일보 (2020. 5. 13). “직업 없다” 인천 학원강사, 거짓 진술… 동료·학생 등 무더기 확진.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30985327440>
- 36) MTN(엠티엔) (2020. 5. 13). 인천 미추홀구, 세움학원 확진자 3명 ‘팔복교회 신도 진단검사 실시 예정’. URL: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1310235243413
- 37) 뉴스1코리아 (2020. 5. 13). 인천 학원강사에 감염 동료도 같은 대학 소속…대학 2개동 임시폐쇄. URL: <https://www.news1.kr/articles/?3933878>
- 38) 뉴시스 (2020. 5. 13). 이태원 일대 방문·접촉자 모두 검사비 지원…익명검사도 무료. URL: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3_0001023147&cID=10201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인천학원 강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천시로부터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고단6613 판결은 징역 6월을,³⁹⁾ 이후 2심인 인천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3558 판결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징역 6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인천학원 강사에 대한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 또한 미디어를 통하여 보도되었고, 그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인천학원 강사의 개인정보들이 다시 언급되기도 하였다.⁴⁰⁾

한편 인천학원 강사에 대하여는 2021. 3. 11.자 인사이트·위키투리·매일신문에서 ‘이태원 7차 감염을 일으킨 학원강사가 2021. 3. 10. 인천 영종도 수련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 극단적 선택을 하여 숨진 채 발견되

&pID=10200

39) 1심 법원은 유리한 정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범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른 피고인의 성적 지향 내지 성 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치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라고 언급하였고, 불리한 정상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3번의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업, 이동 동선 등에 관하여 20번 이상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인 2020. 5. 12.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대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약 6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였다.

40) 국민일보 (2020. 10. 8). 거짓말로 ‘7차 감염’...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89214> ; 인천일보 (2020. 12. 6). 이태원 클럽 다녀온 뒤 거짓말로 7차 감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 항소심도 실형. URL: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154>

었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와 달리 보도되어 다시 한번 인천학원 강사에 대한 그동안의 미디어를 통한 내역이 환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보에 대하여 해당 미디어들은 별도의 사과 없이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⁴¹⁾

2.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와 그 피해 구제

가. 개관

메르스 사태의 35번 환자의 경우에 미디어를 통하여 서울시의 잘못된 정보 공개가 확장되고, 질병의 경과를 미디어가 가공하여 오보를 전달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해당 환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코로나 사태의 인천학원 강사 사건의 경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성별, 나이, 주소, 이동 경로를 공표한 것에 더하여 미디어가 해당 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공표하여 그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집중 보도하고, 소속 대학까지 언급하여 해당 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오보까지 보도하여 전방위적으로 해당 환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의 이들 실례에서의 정보의 수집과 전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위기 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표한 개인정보를 통하여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정보에서 미디어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추출하거나 취재함으로써 인지하게 된 여러 가지 정황을 적극적으로 가공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소위 가짜뉴스⁴²⁾를 그대로 보도하여 자극적인 상

41) 미디어스 (2021. 5. 3). 언론중재위, 멀쩡한 사람 ‘사망자’ 만든 오보 ‘불문’ 결정. URL: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73>

42) 이는 온라인상으로 혹은 전통적 미디어 매체에서 발생하여 사실에 근거하지는 않

황을 전달하는 2차적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적어도 1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감염병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병환자의 인격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으나, 2단계에 해당하는 미디어가 그 공표된 개인정보를 가공 혹은 확장시킴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하여는 미디어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구제수단 중 민사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먼저 메르스 사태의 35번 환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성별, 나이를 공개한 부분은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감염병 환자를 특정시킬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으로 위 정보들은 공개 제외 정보에 해당하나, 당시에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행위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예방법」의 위반이나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서울시가 위 35번 환자에 대하여 확진 시기를 잘못 알고 그의 구체적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서, 마치 35번

으나 마치 사실상 정확한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뉴스 기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허위조작정보로도 불리우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서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대중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 외에도 국가방역체계를 훼손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지성우, 2019; 정영주·홍종윤·박유진, 2021)

환자에게 감염병 확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감염을 확산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사실관계를 신중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성급히 기자회견을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적어도 국가배상 책임의 소지는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의 인천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당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시행착오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감염병 환자의 정보와 그와 무관한 공개 제외정보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학원 강사의 성별, 나이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표된 것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가공과 확장을 통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

위 각 사례에서 기사를 보도한 미디어가 부담하는 「민법」상의 책임은 크게 인격권 침해 시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제751조, 제764조와 미디어의 위법성이 조각될 경우에도 잊힐 권리로서 「민법」 제214조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사후적 기사 삭제 의무일 것이다. 미디어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고 확장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이라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거나 미디어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⁴³⁾ 특히 미디어가 감염병 환자에 관한 정보 가공과 확장에 있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4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있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된 감염병 환자에 관한 정보에 기인한 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메르스 사태의 35번 환자의 경우 미디어의 보도를 통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국면은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35번 환자의 질병 경과를 미디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보를 전달하거나 가공하는 부분이 문제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보도내용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환자의 사망 사실은 비록 감염병 위기 시 감염현황에 해당하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질병 경과까지 적시하는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35번 환자의 사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침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증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어 미디어의 언론의 자유보다 35번 환자의 인격권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 따라서 미디어는 35번 환자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존재한다. 아울러 35번 환자는 미디어의 오보에 대하여 그 기사를 삭제할 권리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의 인천학원 강사 사건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기 그 성별, 나이, 주소, 이동 경로로 이태원 클럽을 공표한 것에 더하여 미디어가 해당 환자가 다녀간 그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공표하여 그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집중 보도하고, 소속 대학까지 언급함으로써 해당 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인천학원 강사의 정보들은 진실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정보가 결합되어 장기간 보도됨으로써 인천학원 강사의 인격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그렇기에 미디어의 보도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를 미디어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천학원 강사의 인격권 사이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당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로 성별, 나이, 구체적 주소가 적시되지 않았었고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동 경로를 여과 없이 밝히고 있어 원 정보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던 가장 큰 원인이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의 방역 해이로 인한 집단감염에 기인하였다는 점, 감염의 전파 차단과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인천학원 강사의 동선을 자세히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점, 「감염병예방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보도의 공공성이 존재한다는 점(이상도, 2007; 권태상, 2020) 등에 비추어 보면, 미디어의 정보 가공 및 공표 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결국 미디어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으로는 성별, 나이, 구체적 주소 등이 감염병의 전파 차단과 예방과 무관한 정보로 공개제외정보로 분류되고 있음에 비추어 인천학원 강사가 잊힐 권리의 행사로서 미디어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된 기사를 삭제하여 줄 것을 별도로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천학원 강사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오보까지 보도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메르스 사태의 35번 환자의 질병 경과와 관련된 오보와 유사한 정황이기 때문에, 인천학원 강사는 미디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기사 삭제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은 공공의 이익이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일정한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그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그대

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정보를 2차적으로 가공하거나 조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제도는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도입된 이래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하여야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 목적을 달성하면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디어 또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면서 정보의 전달에 혼선을 빚고 있기도 하다. 감염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감염병 위기 시 자신의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나,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왜곡된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현행 법제와 판례의 법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태상 (2020).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권 2호, 233-263.
- 권태상 (2020).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6권 2호, 43-79.
- 김두식 (2021). 감염병예방법상의 이동 경로 추적과 역학조사 거부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62권 1호, 121-160.
- 김봉희 (2009).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이익의 조화를 찾아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23호, 463-515.
- 김준호 (2021). <민법강의>. 서울: 박영사.
- 민사판례 (2021). 서울: 박영사.
- 박미정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조사에 대한 비례 원칙의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 14권 2호, 1-25.
- 박아란·김현석 (202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 차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105-151.
- 백경희 (2017).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에서 의료정보 동의에 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입법과 정책>, 9권 3호, 5-26.
- 백경희·김자영 (2021)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28집 1호, 3-31.
- 보건복지부 (2014).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 성낙인 (2018). <헌법학>. 제18판, 서울: 법문사.
- 손형섭 (2008). 프라이버시권·명예권·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 — 표현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7권 1호, 309-344.
- 송가영 (2020).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통권 10호, 5-31.
- 윤진아 (2018).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 정책연구>, 18집 4호, 255-288.
- 이부하 (2017).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18권 1호, 287-310.
- 이상도 (2007). 피의자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2007년 여름호, 84-91.
- 이성은 (1996). 감염병 관리에서의 역학의 활용. <대한간호>, 35권 1호,

25-30.

- 이수중 (2016). 기사삭제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57호, 39-74.
- 이옥철 (2015). 감염병 대유행과 재난관리. <한국방재학회지>, 15권 4호, 18-23.
- 장주봉 (2012).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3호, 34-64.
- 정영주·홍종윤·박유진 (2021).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시론적 논의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0권 1호, 73-114.
- 정중섭 (2016). <헌법학원론>, 11판, 서울: 박영사.
- 정지영·표시영 (2021).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193-236.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2020).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 청주: 질병관리청.
- 지성우 (2019).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8집 2호, 157-192.
- 최진웅 (2020).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NARS 현안분석>, 16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편집대표 김용담 (2016). <주석민법 채권각칙>. 제4판,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 편집대표: 김대휘·김신 (2017). <주석형법 형법각칙>. 제5판,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 ABSTRACT

A Study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amage Remedies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fter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Baek, Kyoung Hee
Associate Professor, Inha University Law School, Lawyer

Information disclosur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newly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s the disclosure of infectious disease-related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owever, while arranging the crisi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leaked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not needed by the public for preventing, managing, 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imilarly, a situation in which the information was secondarily processed and spread through the media occurred. Such occurrences could infringe on the patients' privacy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and may seriously damage their reputation if disclosed. As announc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 media's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conforms with the laws or guidelines at the time. Thus, onl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bear responsibility in this case. Nevertheles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edia may also be held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the patients' personality rights with infectious diseases by processing

or expanding their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recognized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whether there are legal remedies for the media if their publicity has violated personal rights.

Keywords: infectious disease crisis, information disclosure, freedom of expression, defamation, right to be forgotten

[논문투고일 2021. 6. 18. 논문수정일 2021. 7. 20. 게재확정일 2021. 7. 27.]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2. 3.
개정 2017. 8. 23.
개정 2018. 8. 17.
개정 2020.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는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를 정하여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과 관련된 실무는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발간 주무부서가 담당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대체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편집위원의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논문의 구분) ①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논문: 논문의 저자가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해당호의 특집 주제에 응모한다고 명시한 논문

나. 연구논문: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해당호의 특집 주제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의 일반에 관한 논문 및 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등

다. 특별논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타 학술대회 및 위원회 주관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된 주제논문 중 저자가 게재를 희망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의 필요성을 인정한 논문

② 기획논문에 응모하는 저자는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안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청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제안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논문의 경우, 주제 적합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의 주제를 미리 정하여 청탁할 수 있다.

④ (삭제)

- ⑤ 연구논문 및 특별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투고신청서(별지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투고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려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에 있는 논문
 2. 기획논문과 연구논문에 이중 공모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논문
 3. 학문적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논문
 4. 동일 저자에 의해 이미 다른 형태로 타 출판물에 발표된 논문. 단, 논문의 저자는 선행 출판물과 투고 논문의 상이성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으며, 논문의 상이성 여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②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임기 내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의 이름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여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과 협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논문의 주제가 학자가 평가하기 힘든 실무적인 분야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실무가 중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투고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⑤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은 심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교체될 수 있다.

제9조(심사절차) ①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해당호에 논문을 투고한 사람은 해당호에 투고된 다른 논문의 심사를 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예규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4단계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

1. 현행 게재(A): 85점 이상
2. 부분 수정 후 게재(B): 70점 이상 85점 미만
3. 대폭 수정 후 재심사(C): 60점 이상 70점 미만
4. 게재 불가(D): 60점 미만

②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에게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3)를 첨부한 전자우편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②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자는 의견 또는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맡길 수 있다.

제12조(논문의 수정) 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 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기호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 불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논문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수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별지에 기록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별로 ‘수정’ 또는 ‘수정불가’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수정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자체 심사를 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게재 논문의 확정) ① 게재 논문은 발간 기한에 맞춰 심사 및 수정절차를 완료한 논문 중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② 원고료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게재를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지급하며,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게재 확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6년 10월 10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8월 2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의결: 2018년 8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0년 8월 12일)

[별지 1]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접 수 번 호		*위원회 기재
제안대상 주제		
성 명	국 문	
	영 문	
소 속 및 직 위		최종학위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자 택	(우편번호:)
연락처	근 무 처	
	휴대전화	
	전자메일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0권 제0호 기획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구를 제안합니다.

제안일자 년 월 일

제 안 자 _____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1. 논문제목

가. 국문:

나. 영문:

2. 연구개요

3. 연구방법론

4. 연구내용

5. 관련 연구실적 목록

※ 응모 주제와 관련된 응모자의 연구실적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별지 3]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

투 고 자		투고일	
논문제목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세부 심사의견은 별첨 '심사위원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3. 이의제기 방법

<별첨>

[심사위원 의견서]

심사평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②	
심사위원 ③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7. 2. 3.
개정 2018. 8. 17.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11.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이하 “학술지 예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한 검증과 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 또는 누락하여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별지)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학술지 예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상관없이 학술지 예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원고작성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조 제2항의 위조, 변조, 표절행위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 저자표시 행위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는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과 관련,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연구자 및 관계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심의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 ④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학술지 예규 제10조에 따라 지급한 원고료를 전액 환수한다.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증인, 참고인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자 소속과 직위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의결: 2018년 8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9년 3월 14일)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9년 11월 29일)

[별지]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논문제목

본인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심사를 거쳐 게재된 적이 없는 저자 본인의 지적 창작물입니다.
2. 본 논문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다른 출판물을 표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증합니다.
3. 본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속 및 직함	연 락 처	서 명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제정일 2015. 4. 17.

개정일 2016. 3. 25.

개정일 2018. 8. 17.

1. 논문 작성 일반규칙

- 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논문의 작성은 워드프로세스 ‘훈글’로 작성하고, 전자우편(journal@pac.or.kr)으로 제출한다.
- 나. 논문 편집은 A4 사이즈로 위아래 여백 각 35mm(머리말·꼬리말 0mm), 좌우여백 각 30mm, 글자체는 신명조,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11, 줄 간격은 160%로 한다.
- 다. 본문의 각 문단은 한 자 들여쓰기, 참고문헌은 세 자 내어쓰기를 하고 양쪽 정렬을 한다. 단, 블록 인용, 표와 그림의 제목,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라. 논문은 국문 초록(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 국문 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 문헌, 영문 초록 순으로 한다. 부록의 첨부가 필요할 경우 부록의 위치는 참고 문헌과 영문 초록 사이로 한다.
- 마. 국문 초록은 논문 내용을 6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서술하고, 영문 초록은 논문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영문 600단어 내외 권장). ‘핵심어(영문 초록은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5개를 선정하여 초록 한 줄 아래 나열한다.
- 바. 지원받은 기금의 출처, 학위 논문 등과의 관련성, 저자의 이메일, 교신저자 등의 표기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

용하여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

사. 본문의 소재목들은 수준별로 1. 1. 가. (1). (가). 1). 가). ①. ㉠ 순서로 사용한다.

2. 각주의 작성

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PA)의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문헌의 인용: 단순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작성하지 않고, 본문 내의 인용으로 표기한다.

(1) 본문 중 저자의 인용

- 국내문헌: 성과이름(출판연도)
- 동양문헌: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성(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예 김수철(2014)은 ...라고 지적했다.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2013)는 ...을 주장하였다.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라고 정의했다.

(2) 저자명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

- 국내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출판연도)
- 동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예) ...을 지적한다(김수철, 2014).
- ...을 주장하였다(内藤正中, 2013).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2012).

(3) 재인용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우선 표기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표기

- 예) 김수철(2014: 박희수, 2012 재인용)은 ... 라고 지적했다.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 이희승, 2012 재인용).

(4) 직접 인용

- 단문의 인용: 인용문은 따옴표(“ ”)로 표시하고, 인용문 끝에 쪽수를 괄호로 쓴다. 번역서는 번역서 쪽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 예) 김수철(2014)은 “미디어 플랫폼에 따른 콘텐츠의 변형이 중요하다”(12쪽)고 주장했다.
-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미디어는 ... ”(132쪽)라고 주장했다.

- 장문의 인용: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내어쓰기 한다. 블록의 끝에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예) 분석대상관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간지와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고, 일간신문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으로 나타났다(한수도, 2014, 123쪽).

(5)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본문 중 저자의 인용: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기재
- 저자명이 본문 중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은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서양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 김수철과 박희수(2014)는 …라고 지적했다.

맥루언과 풀리처(McLuhan & Pulitzer, 1911)는 …라고 주장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 2014).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 Pulitzer, 1995).

○ 세 명 이상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저자가 세 명 이상 여섯 명 미만인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는 두 번째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의 성과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등’(또는 ‘외’)이나 ‘et al.’을 표기한다.

☞ 김수철, 박희수, 그리고 최수연(2014)은 …라고 지적했다. 김수철 등은 후속 연구에서 … 주목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최수연, 2014). …라고 한다(김수철 등, 2014).

맥루언, 풀리처, 그리고 허스트(McLuhan, Pulitzer, & Hearst, 1910)는 …라고 주장했다. 맥루언 등은 … 한다고 한다.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Pulitzer, & Hearst, 1910). 또한 …도 지적되었다(McLuhan et al., 1910).

(6) 두 편 이상 연구의 인용

-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인용을 표기할 경우, 국내문헌(저자명의 가나다 순), 동양문헌(국가명의 가나다 순), 서양문헌(저자명의 알파벳 순) 순으로 배열하고, 각 연구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배열하되, 저자명은 한 번만 표기한다. 출판연도가 동일할 경우는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관련 연구들(김수철, 2010; 박희수, 2013; 内藤正中, 2010; Hearst, 1910; Pulitzer, 1911)은 이러한 결과를 …
최근 연구들(김수철·박희수, 2012, 2013)은 …
이러한 연구(김수철, 2011a, 2011b)는 …

3. 참고문헌의 작성

가. 일반규정

- (1)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 ‘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기재한다.
- (2) 참고문헌은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열거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3) 제1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문헌에 함께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를 앞에 배열한다.
- (4) 동일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에 출판된 문헌이 두 편 이상일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 (5)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저자의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Sur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는 가운데점(·)으로 구분한다. 저자가 다수인 서양문헌의 경우는 쉼표(,)로 구분하되, 마지막 저자는 ‘&’로 구분한다.

나. 문헌의 종류별 표기

(1) 단행본

저자명 (출판연도). 단행본명.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저작물 제목은 꺾쇠(< >) 안에 표기하고,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되, 주제명과 부제목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편집서일 경우, 국내 편집서는 저자명 뒤에 ‘(편)’, 서양 편집서는 ‘(Ed.)’ 또는 ‘(Eds.)’를 표기한다. 판수(edition)는 제목 뒤에 (제2판) 또는 (2th ed.) 등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미국은 주 포함)와 출판사명을 기재하고, 둘 사이는 쌍점(:)으로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의 일련번호를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

- 예 김수철 (2015). <디지털시대>. 서울: 책세상.
박희수 (편) (2013). <세계의 언론법>. 부산: 책고을.
Hearst, W. R., Pulitzer, J., & McLuhan, H. M. (Eds.) (1950). *History of privacy: Arising issues of privacy in public spac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최수연 (2013). <대량 조정처리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조사연구 2015-00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호수, 쪽수. 순으로 하되, 국내 학술지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쪽이 여러 면에 걸쳐 있을 경우 붙임(-)으로 표기한다. 서양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주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권수 뒤 괄호 안에 기재하되,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호로 이어지는 연속번호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수를 적지 않는다.

-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Hearst, W. R. (1950).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Journal of*

Human Rights, 18(3), 123-142.

(3) 편저 속의 한 장(Chapter)이나 논문

편집된 책에 포함된 한 장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인용한 장의 저자명 (출판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은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 (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Surname)을 기재한다. 마지막 편집자 성 뒤에 ‘(Ed.)’ 또는 ‘(Eds.)’를 쓴다. 이때 국내 편집서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서양 편집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김수철 (2013). 소송의 사회적 비용과 언론중재제도. 박희수·최수연 (편). <미디어법제의 미래> (123-142쪽). 서울: 새미디어.

Hearst, W. R. (1950).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cy. In J. Pulitzer, & H. M. McLuhan (Eds.), *Privacy and Big Data: Surveillance or Public good?* (pp. 703-732). Trenton, NJ: Ablex.

(4) 번역서 또는 편역서

원저자 (원저 출판연도). 원저 제목(출판본). 역자 (번역서 출판연도). 번역서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하고, 역자명 뒤에 ‘(역)’ 또는 ‘(편역)’을 표기한다.

예 McLuhan, H. M. (2013). *Remedies for damage to reputation* (3rd ed.). 김수철 (역) (2014). <명예의 훼손과 구제>. 서울: 서울출판사.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발표자명 (발표연도, 월).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발표 도시명(:발표 장소 표기 가능).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명은 꺾쇠 안에 기재한다.

예 최수연 (2014, 8월).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대전: 언론연구소.

(6) 학위논문

국내 대학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논문제목>. 학위 수여 대학과 학위명. 순으로 한다. 서양 대학의 경우, 학위명, 수여 대학, 국가명(미국은 도시 및 주)을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논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미출판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명 뒤에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Unpublished master's thesis를 표기한다.

예) 박희수 (2015). <부정적 보도의 강도가 조정 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McLuhan, H. M. (1995). *A Study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cross-border complaints on med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7) 신문, 잡지, 또는 뉴스레터

출판일자가 명확한 경우 저자명 뒤에 출판년, 월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불명확한 경우는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기사는 게재면을 기재하고, 여러 면에 걸쳐 실린 경우는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 특정인의 기고문은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명으로 한다. 익명의 기고자는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작성자를 대신한다.

예) 한국신문 (2014, 2, 28). 미디어 콘텐츠 투자 늘었다. 3면, 4면.

최수연 (2013, 3, 4). 신생 미디어 플랫폼, 부작용 대비해야. <한국신문>, 11면.

McLuhan, H. M. (2013, July 5). Interactive storytelling and multimedia. *The New York Times*, pp. B1, B5.

신생 미디어 플랫폼 (2013, 3, 4). <한국신문>, 11면.

다. 온라인 자료 표기

(1) 정기간행물

학술논문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중 하나로 기재한다. 마지막에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주소(URL:)를 제시한다(외국문헌의 경우 Retrieved from으로 표기). 인쇄본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권, 호수 기입 없이 간행물명과 URL만 제시한다.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전자매체본].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URL: <http://www.pressandrights.go.kr/reference/journal.jsp>

Achankeng, F (2014).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On-line].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13(2), 11-38.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2) 비정기간행물

저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표기한다.

예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n. d.*).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3) 연구보고서 또는 세미나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와 같이 문서 제공자와 문서 작성자가 구분되는 경우는 기관명을 먼저 기재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쓰고자 할 경우에는 웹 사이트에 문서가 게재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의 이름을 표기한다.

예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

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최수진·김정섭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4-19).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재한다. 온라인상에서 읽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표기한다.

예) 통계청 (2013). 정기간행물 연도별 증감현황.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O#SubCont

금준경 (2015, 1, 14). 어뷰징 기자들과 대화 “클러스터링? 검색기사 막기 힘들 것”.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28>

라. 법률 자료의 표기

(1) 판례

우리 판례는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미국판례는 사건이름, 판례집 권수, 판례집 이름, 해당 판례의 첫 페이지, 판결 연도 순으로 한다.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판례명(연도)’, 또는 ‘(판례명, 연도)’로 표기하고, 외국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예)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대법원, 2013. 2. 14.)

Brown v. Board of Educ., 347 U.S. 483 (1954).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2) 법령

우리 법률은 법률명 다음에 법률시행일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미국의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 시행연도 순으로 표기하고,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시행연도)’로 기재한다. 법률개정안은 개정 법률안명 다음에 대표발의자와 발의일자를 기재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 4.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재영, 2015. 1. 30.).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 표와 그림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목을 붙이고, 표 또는 그림의 상단에 제시한다.

나.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꺾쇠 안에 표기(예시: <표 1> 참조.) 한다.

다. 표, 그림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는 표와 그림의 하단 왼쪽에 출처를 표시한다.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편집위원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서보건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미선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소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재 ■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황용석 ■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ISSN 2465-9207

2021년 제7권 제2호

2021년 8월 15일 발행

편집·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인쇄 ■ 도서출판 관악사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전화] 02.397.3042~5

[이메일] journal@pac.or.kr

-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본 학술지의 무단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pac.or.kr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